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017. 9.

서울특별시교육청

차 례

Ⅰ.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 ····· 3
2. 2018년도 교육재정여건 및 전망 ····· 5
3.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 9
4. 2018년도 예산편성 수립 시 행정사항 ····· 11

Ⅱ. 2018년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 지침

1. 2018년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방향 ····· 29
2. 예산편성 기본 원칙 ····· 30
3. 목(그룹)별 편성 요령 ····· 33
4. 투자사업비 편성기준 ····· 50
5. 건전재정 운영 지침 ····· 52

Ⅲ.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1.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 56
2.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한 기준경비 ····· 57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기준경비 ····· 63

【부 록】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70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 73

〔별표 1〕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 ····· 75

〔별표 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79

〔별표 3〕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 86

〔별표 4〕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101

〔별표 5〕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 121

3.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163

4.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변경내용 ···· 164

Ⅰ.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 1)

가 예산의 개념

❑ 시·도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수입·지출내역과 규모를 금전적 수치로 나타내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1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

❑ 교육비특별회계*의 1회계연도 동안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회계

나 예산편성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1) pl,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 (교육부)

다 예산의 주요 내용

- ❑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 지방교육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등을 규정
- ❑ 세입·세출예산 : 1회계연도 동안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과 금액
- ❑ 계속비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
- ❑ 채무부담행위 :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의 내역과 금액
- ❑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비

라 예산편성 절차

①	교육부	■ 예산안 편성 지침 수립 및 시·도교육청 통보(8월~9월)
②	시·도교육청	■ 예산안 편성(9~11월)
③	시·도교육청	■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11.10까지)
④	지방의회	■ 예산안 심의·의결(12.15까지)·이송(12.18까지)
⑤	시·도교육청	■ 예산 교육부 보고 및 고시(지방의회로부터 이송 받은 이후 지체없이)

2 2018년도 교육재정여건 및 전망 2)

가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미국·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o 미국은 新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등으로 개선 예상

o 유로존·일본은 내수회복세 둔화 등으로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중국은 경제 구조전환에 따라 완만한 감속 성장 예상

o 기타 신흥국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러시아 등 자원국을 중심으로 회복 전망

o 다만, 보호무역주의 추세, 美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 유럽 정치리스크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하방위험도 상존

o 세계경제 회복, 新산업 정책효과 등으로 수출 및 내수가 점차 개선될 전망

o 다만, 기업구조조정 및 가계·기업부채 부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은 위험요인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7.3월)

	'15년	'16년	'17년	'18년
세 계	3.2	3.1	3.4	3.6
- 미국	2.6	1.6	2.3	2.5
- 유로	2.0	1.7	1.6	1.6
- 일본	1.2	1.0	0.8	0.5
- 중국	6.9	6.7	6.5	6.0
- 신흥국	4.1	4.1	4.5	4.8
- 한국	2.6	2.6	2.6	2.8

2) p26,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나 교육재정 전망

❑ 세입 전망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 및 세입확충 노력에 따라 다소 개선될 전망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내수경기 점진적 회복 등에 따른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 증가로 전년 보다 증가 전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예산 * 추경포함	'17년 예산		'18년 정부예산안		
		본예산	추경	예산안	'17본예산 대비	'17추경안 대비
교부금 계	431,615	429,317	447,185	**495,579**	66,262	48,394
(특별회계 포함)	-	468,726	486,594	**534,506**	65,780	47,912
□ **보통교부금**	416,399	412,992	430,145	**477,121**	64,129	46,976
(특별회계 포함)	-	452,401	469,554	**516,048**	63,647	46,494
□ **특별교부금**	15,216	16,325	17,040	**18,458**	2,133	1,418
· 국가시책(60%)	9,130	9,795	10,224	**11,075**	1,280	851
· 지역현안(30%)	4,565	4,898	5,112	**5,537**	639	425
· 재해대책(10%)	1,522	1,632	1,704	**1,846**	214	142

* 최종 예산안 확정 시 변동 가능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3조 8,927억원 ('17년 3조 9,409억원)

- (국고분 20,586억원) + (교육세분 18,341억원)

*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전액 국고 반영

o (**지방세 전입금**) 부동산경기 둔화 등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세가 완만하여 전년 수준을 유지 내지 소폭 증가할 전망

o (**자체수입**) 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저금리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로 소폭 감소 전망

o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사업 축소 정책으로 전년 대비 감소 전망

o (**순세계잉여금**) 적정예산 편성 및 예비결산 실시 등 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구노력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지방세 전입금 등 세입항목 변동 추이 >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지방세전입금	계	77,807	82,453	90,023	95,761	99,244	5.0%
	지방교육세	53,857	55,815	61,902	64,061	66,815	4.4%
	담배소비세	5,251	5,514	5,185	5,964	6,544	4.5%
	시·도세	18,699	21,124	22,936	25,736	25,885	6.7%
자 체 수 입		15,637	14,882	14,046	14,659	13,035	△3.6%
지 방 교 육 채		9,583	38,022	61,268	30,102	13,462	7.0%
순세계잉여금		20,406	13,876	13,217	19,628	21,234	0.8%

* 2013~2016년은 결산액, 2017년은 7월말 기준 최종예산액

❑ 세출 전망

인건비, 상환지출 등 **경직성경비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수요는 증가** 전망

o (**인건비**) 호봉승급과 물가상승에 따른 봉급인상,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에 따라 **전년 보다 증가** 전망

o (**기본운영비**)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및 학급 감소 등에 따라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o (**이전지출**) 원아수 감소에 따라 자치단체보육료 보조는 소폭 감소하나 기타 이전지출 수요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o (**자본지출**) 학교 신·증설 수요 감소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감소** 전망

o (**전출금 등**) 학생수는 다소 감소하나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수 소폭 증가 등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o (**예비비 및 기타**) 특별한 변동 요인은 없으며,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성질별 세출항목 변동 추이 >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계	532,958	567,894	565,979	600,419	690,081	5.3%
인 건 비	316,725	331,238	352,174	363,511	385,390	4.0%
운 영 비	21,711	19,844	19,444	20,460	22,798	1.0%
이전지출	19,228	25,148	30,834	30,786	32,546	11.1%
자본지출	50,155	49,055	45,418	61,092	105,470	16.0%
상환지출	305	19,941	1,151	3,826	14,994	117.9%
전출금 등	124,714	122,573	116,792	119,933	125,275	0.1%
예비비및기타	119	94	166	811	3,607	97.8%

※ 2013~2016년은 결산액, 2017년은 7월말 기준 최종예산액

3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3)

❖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의무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적기 집행
❖ 일자리 창출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발굴·투자
❖ 교육환경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

o 모든 **재량지출사업은 원점(zero-base) 재검토하여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o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o **유사·중복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예산낭비요인 제거

o **신규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의무지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적기 집행**

o 유아교육·보육비, 지방채 이자상환 등 **의무지출은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 노력

o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은 **다른 용도에 사용 금지**

- 유아교육지원금의 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 보고(다음 회계연도 4.30까지)

❑ **교육복지재정 지출의 건전성 확보**

o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신설 지양**

o 의무지출이 아닌 교육복지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별적 추진**

❑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환경 변화에 집중 대응투자**

o 교육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

o 인구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 중심 집중 투자

3) p9~p10,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나 재정효율화 지속 추진 및 투명성 제고

❑ 교육환경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방식 개선

o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 학생수 감소, 지역간 인구이동 등을 종합·검토하고 중앙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신설수요를 적정수준 관리

o (**학교시설비 교부**) 사업별 공정률을 반영한 교부방식으로 개선

※ 1차연도(전체교부액의 20% 이하), 3차연도(전체교부액의 20% 이상)

o (**지방채 발행**)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만큼만 발행

- 학교신증설비, 교부금차액보전 등의 지방채 승인액 중 당해연도 미발행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 발행 가능토록 함

※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1호, '17.6.19.)

- 최근 지방채 발행 확대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 병행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인센티브 신설('18년부터 적용)

❑ 재정운용에 주민 등 참여 및 공개 강화

o (**지자체와 세출예산 편성 협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금 전입시기를 협의

- 협의결과는 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된 사항을 준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 참고 ('16.7.5. 시행)

o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에 반영

-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을 공개

※ 일반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위원회 구성 및 위원 교차 구성 권장

o (**재정운용상황 공개 강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하여 재정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소속 기관 및 각종 회의 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홍보 강화

o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관련 제안 처리 등을 위해 교육청별로 설치·운영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17.7.5)

4 2018년도 예산편성 수립 시 행정사항

가 예산편성 업무 흐름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법 제33조)

-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한 계획 수립
- 유·초·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총 재정투자계획을 전망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포함) 수립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립

- 교육부 예산편성 운용 규칙 및 훈령을 기초로 자체 기본지침 수립 및 시달

↓

예 산 편 성
(8~10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교육부〉
- 일반회계 전입금 통보 〈서울시〉
-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자문
  - * 지방재정법 제36조
  - * 지방자치법 제127조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1조~제14조

↓

예산안 심의·의결

- 시의회 제출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 〈시의회〉
  - * 지방자치법 제127조
  -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예산 확정 및 고시

- 예산안 의결 후 3일 이내 이송 〈시의회〉
- 이송 후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
  - * 지방자치법 제127조
  -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20조

나 예산안 심의 및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 관련 근거

o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1조

❑ 예산안 심의 시 교육감 동의

o 의회는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음

❑ 수정예산안 제출

o 교육감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

o 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교육감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기준 4)

【 세입예산안 편성 】

2018년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항목별로 빠짐없이 반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o (재원)

- **(보통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27% × 96% + 교육세 일부(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특별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27% × 4%
- **(특별회계지원금)**「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비로 해당년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

o **(편성)**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에 내시 또는 교부한 금액으로 편성

- 특별교부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우 예산 성립전 사용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집행,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행위 지양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o (재원)

-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액
-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 **(시·도세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

* (서울)100분의 10, (광역시, 경기도)100분의 5, (세종, 도지역)1,000분의 36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2분의 1의 금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6% × 20.27%)

---

4) p11~p17,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 **(교육급여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급여보조금
- **(비법정이전수입)**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기타 지자체 전입금

o **(편성) 지자체와 협의한 금액으로 편성**

-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전입금의 규모, 전출시기 및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반영**

❑ **민간이전수입**

o **(재원) 민간기부금 또는 민간지원금**

o **(편성)** 민간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기부 또는 지원하는 금액으로 편성

- 민간으로부터 **이전이 확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

❑ **자체수입**

o **(재원)** 고등학교 등 **수업료 및 입학금**, 공유재산·물품 사용·**임대료 및 매각대금, 이자수입** 등

o **(편성)**

- **(고등학교 등 수업료 및 입학금)**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 대상학생 수 변동,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반영
- **(사용·임대료)**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 연간 사용수익허가(임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반영
- **(자산매각수입)** 연간 공유재산·물품 처분계획에 의거 대상자산에 대한 매각금액을 합리적인 추계기법을 사용하여 추정 반영
- **(이자수입 등)**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 특이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

❑ 지방교육채

o (편성)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만큼만 편성·발행**

- 승인액 중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는 이월 승인 신청**
- 이월 승인 받은 지방채는 **차년도 자금 필요 시기에 발**행

❑ 순세계잉여금

o (편성)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예비결산 결과 등을 검토 반영

- 재정지출 과부족에 따라 **임의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 지양**

【 세출예산안 작성 】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비효율적 지출 감축
❖ 누리과정교육비 등 의무지출 예산편성에 재원을 우선 배분
❖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이월·불용액 최소화

❑ 경상사업비

o【인건비】2018년도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교직원인건비 기준재정 수요액 범위 내에서 편성**

- **호봉승급분(1.83%) 및 처우개선율(2.6%) 반영**

o【기본운영비】시·도교육청별 제반여건, 수년간 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체 예산편성지침 등으로 기본운영비의 항목과 기준금액을 정하여 편성

- 공공요금, 보험료 등 경직성경비는 우선 반영
- **(학교의 전기요금 등) 냉·난방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이 편성·지원**하고 여름·겨울철 쾌적한 학교교실 조성 유도

o【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제3조「별표 1」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편성

o【채무상환】2018년도에 상환해야 할 지방교육채 및 BTL원리금을 편성

❑ **교육사업비**

o **【신규사업】** 2018년도 신규 사업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출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o **【계속사업】 원점(zero-base)에서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추진

-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규모, 지속 여부, 투자시기 등을 재검토

❑ **시설사업비**

o **【계속비 편성】**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은 계속비로 편성**

-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 해당연도에는 **집행가능금액 만큼만 편성**
- 계속비가 아닌 **일반예산에 과다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관행 금지**

o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 시설사업은 **해당연도에 집행가능액 만큼만 편성**하고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여 **이월액 최소화**

o **【설계공모예산】 자체투자심사가 완료된** 학교건축 관련 **설계공모예산은** 적정 사업기간 확보 등에 필요시 **중앙투자심사 전에 편성 가능**

❑ **의무지출**

o **【의무지출의 범위】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 지출**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6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o **【편성】** 의무지출은 지출과 지출규모가 의무화된 경비이므로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예산에 소요액 전액 편성

※ 의무지출·재량지출 구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의 규정에 따르며, 「의무지출·재량지출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준용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사업비

o **【지방보조금의 범위】** 교육감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o **【민간보조】**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o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교육감이 정책상, 재정사정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o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법인·사학경영자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지원하는 시설사업 지원금

o **【편성】**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
- 당해 **시·도교육청의 사무와 관련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편성**
-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로 편성

  ※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 가능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 도래사업, 시·도교육청 고유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가능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는 5년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 제한**

※ 지방보조금 관리는「지방재정법」,「시·도교육청의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준용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5941,2015.7.30.전부개정)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o **【경비성격】**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o **【편성규모】 본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

o **(편성·집행)** 예산편성을 최소화하되 경상비, 시설비 외에 **교육시책사업에도 집행** (경상비, 시설비, 교육시책사업비로 구분 집행)

- **여비, 업무추진비, 교직원 복지지원 및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집행 불가, 경상비는 10% 초과 금지**

*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반드시 해당사업에 예산편성 후 집행

※ 감사원 지적사항 : 예비비와 성격 중복, 경상비 및 시설비 집행 과다 등

❑ 성과계획서 작성

o **【근거】**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화

o **【작성대상】**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사업은 제외 가능

-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 경상사업비

o **【작성방법】** 재정사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지표 등을 설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참조

❑ 성인지 예산서 작성

o **【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 2012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칠 영향의 분석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 의무화

o **【작성대상】**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업(교원연수지원 등 26개 세부사업) 등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제2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

o **【작성방법】** 성평등 목표, 성인지 예산의 규모, 성별 수혜분석 및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설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5] 서식1-14. 성인지 예산서 작성서식을 참조

라 행정사항 5)

1) 예산안 편성 시 유의사항

❖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이월·불용액 최소화
❖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해당 예산 과목 정확하게 구분

❑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이월·불용액 최소화

o 지난년도 예·결산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

-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
- **(시설비)**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하여 명시이월 금지
- **(예비비)** 최근 5년간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소금액으로 편성

❑ 세입예산 과목 구분

o 해당 세입예산의 **장·관·항·목과 원가통계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예산시스템에 입력·편성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국고지원전입금(12203)'에 편성하고 '광역자치단체전입금(12201)'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 시·도교육청 간 이전수입은 '자치단체간이전수입(16200)'에 편성하고 '민간이전수입(16100)'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2]「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을 참조

❑ 세출예산 사업 구분

o 해당 세출예산의 **정책·단위·세부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예산시스템에 입력·편성

5) p17~p25,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급식비는 '급식지원' 단위사업에 편성**
- **급식지원에 따른 여비 등 제반경비는 '급식관리' 단위사업에 편성**

  * 급식지원에 따른 여비 등 제반 경비를 '급식지원' 단위사업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가 아닌 업무추진비이므로 '본청운영' 등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

> ※ 기타 자세한 내용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3]「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을 참조

❑ **세출예산 과목 구분**

o 해당 세출예산의 **목·세목·원가통계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예산 시스템에 입력·편성

- 지방교육채 상환지출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원금은 '차입금상환(510-01)'에, 이자는 '차입금이자(510-02)'에 편성

  * 원금을 '차입금이자(510-02)'에, 이자를 '차입금상환(510-01)'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 사립학교 학교회계 직원 등 기타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는 '사립학교기타직인건비지원(620-16)'에 편성

  * 교과교실강사, 원어민교사, 상담강사 등 사립학교 기타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를 '인건비재정결함보조(620-08)'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 ※ 기타 자세한 내용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4]「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을 참조

2) 시설비 이월액 축소 방안 ⇒ 시설비 계속비로 예산편성·집행

❑ **이월액 현황**

o **'16년 이월액은 '15년 대비 0.2조원 증가**('15년 3.7조원→'16년 3.9조원)

- **시설비 이월액**은 전체 이월액의 **약 84.1%로 대부분을 차지**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예산현액	548,034	574,487	603,988	620,220	656,972
이 월 액 (예산현액 대비)	**23,760** (4.3%)	**25,705** (4.5%)	**23,300** (3.9%)	**37,330** (6.0%)	**39,001** (5.9%)
시설비 이월액 (이월액 대비)	**23,200** (97.6%)	**25,151** (97.8%)	**22,669** (97.3%)	**36,825** (98.6%)	**32,813** (84.1%)

❑ 시설비 이월액 과다 원인

o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까지 **과다 예산 편성 → 관행적 이월**

o 설계용역, 공사계약 및 **집행에 상당기간 소요**

❑ 시설비 이월액 축소 방안

o **(학교시설비 교부) 사업별 공정률을 반영한 교부방식으로 개선**

* (현행) 1차연도(전체교부액의 20% 이하), 3차연도(전체교부액의 20% 이상)

o **(계속비 편성)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은 계속비로 편성**

-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 해당연도에는 집행가능금액 만큼만 편성
- 일반예산에 과다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관행 금지

o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 집행)** 시설사업은 해당연도에 집행가능금액 만큼만 편성하고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을 활용·집행하여 이월액 최소화

o **(지방채 발행)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만큼만 발행**

- 학교신증설비, 교부금차액보전 등의 지방채 승인액 중 당해연도 미발행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 발행 가능토록 함

※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1호, ’17.6.19.)

3) 불용액(집행잔액) 축소 방안 ⇒ 예비결산 및 연중 집행점검관리

❑ 불용액 현황

o '16년 불용액은 '15년 대비 금액 및 비율 큰 변동 없음

- 인건비, 시설비 및 예비비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67.9%로 대부분을 차지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예산현액	548,034	574,487	603,988	620,220	656,972
불 용 액 (예산현액 대비)	**19,935** (3.6%)	**15,824** (2.8%)	**12,795** (2.1%)	**16,911** (2.7%)	**17,552** (2.7%)
인 건 비	4,884	3,799	1,984	5,032	4,879
시 설 비	5,253	4,306	4,462	4,293	4,417
예 비 비	5,490	3,808	2,799	3,762	2,617
기타사업비	4,308	3,911	3,550	3,824	5,639

❑ 불용액 과다 원인

o 관행적 과다 예산편성으로 불용

- 인건비, 예비비 등의 예산을 실제소요액보다 과다 편성함에 따라 관행적으로 상당한 불용액 발생

o 재정집행점검관리 및 불용액 축소 노력 미흡

- 연중 재정집행점검관리를 통해 불용예상액을 파악하고 필요사업에 반영·집행하여 불용액을 축소하려는 노력 미흡

❑ 불용액 축소 방안

o 적정예산 편성 집행 ⇒ 관행적 과다 예산편성 지양

- **(인건비, 예비비)** 실제소요액으로 편성·집행하고 **예비결산을 실시**하여 **불용예상액은 필요사업에 추경예산 반영·집행**
- **(시설비) 회계연도 내에 집행가능금액 만큼만 편성**·집행하고 낙찰차액은 필요사업에 추경예산 반영·집행

o 예비결산 및 연중 재정집행점검관리

- **(예비결산)** 상반기 이내에 예비결산을 실시하고 불용예상액은 필요 사업에 추경예산 반영·집행
- **(재정집행점검관리)** 연중 집행점검단을 운영하고 재정집행실태를 점검·관리하여 집행률을 제고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 철저

❑ **목적 및 필요성**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국가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 **주요내용**

o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과 에듀파인 연계를 통한 보조 사업 관리**

※ 내역사업 교부, 예산편성, 교부신청, 집행실적, 계약정보, 주요재산정보, 이월, 정산 정보 등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o **(교육비특별회계)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과 연계 관리를 위해 에듀파인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관리 철저**

-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e나라도움과 에듀파인 연계를 통한 내시정보(가내시 또는 확정내시) 수신 이후에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

※ 내시(가내시 또는 확정내시) 연계정보가 없는 경우 예산 편성 금지

- 하나의 국고보조금사업(매칭사업 포함)은 하나의 세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하며, 다른 재원과 혼용하여 세출예산 편성 금지

※ 매칭 국고보조금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자체 대응투자 예산을 반드시 포함하여 하나의 세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 편성

- 공모형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공모기관 세입계좌가 아닌 시·도교육청 세입계좌로 교부신청(계좌변경시 KERIS 통지요망)

o **(학교회계) 국고보조금사업의 세부사업 편성 기준 및 재원구분 설정 준수**

- 국고보조금 중 교육급여는 지원금 항목에 따른 세부사업 편성 기준 준수

【에듀파인 교육급여 세부사업 편성 기준】

구분	지원금 항목	에듀파인 세부사업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수업료, 입학금	학비지원
	교과서대	교과서비지원

- 국고보조금 사업은 예산편성 시 재원 구분을 반드시 국고가 포함된 재원으로 매핑

【에듀파인 국고보조금 재원 매핑 기준】

구분	재원 구성	에듀파인 재원 매핑
국고보조금 포함	100% 국고	국고
	국고 + 광역자치단체 예산	국고-광역
	국고 + 기초자치단체 예산	국고-기초
	국고 + 교육청·학교 예산	국고-자체
국고보조금 미포함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 예산	일반

5) 통합재정통계 작성 관련 협조(내부거래)

❑ 현황 및 문제점

o 「(시·도교육청 간 거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위탁사업 및 분담금 등의 사업비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전입·전출금 발생

- 예) 전국연합학력평가, 행복교육박람회 등

o (통합재정통계 작성) 국가 통합재정수지(국가재정법 9조) 및 지역통합재정통계(지방재정법 59조) 등의 통계 자료 작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별 내부거래 추출 필요

- 시·도교육청별 내부거래(전입·전출금) 자료 추출 시 명확한 세입·세출목 및 거래처명으로 거래가 되지 않아 정확한 내부거래 추출이 불가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o (전입·전출금의 구분) 시·도교육청별 전입·전출금을 구분하기 위하여 명확한 세입·세출 과목을 통한 집행

- 세입 : 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 자치단체간이전수입 - 전입금(16201)

※ 전입금을 세외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 세출 : 전출금 등 - 기타특별회계전출금(610-02)

○ (거래처명 명확화) 지출결의 시 실거래처명이 모호하지 않도록 유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통일된 거래처명 등록으로 일치

※ ‘OO시(도)교육감’, ‘△△교육연수원’, ‘송금의뢰서 별도 첨부’ 등 통일되지 않은 모호한 거래처명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

Ⅱ. 2018년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 지침

1 2018년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혁신미래교육 현장안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자치시대' 구현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혁신
- 협력적 인성을 갖춘 세계-민주시민 양성
-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혁신 실현
-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차등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 찜통 냉골 교실 해소 및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노후 냉난방개선 추진
- 현장의 수요가 높은 강당겸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
- 우선순위 시설 이외의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나 기본방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확보**

o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역점과제 지원 강화**

o 중복·유사·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사업 축소·통합·폐지 추진**

o 불용액 과다 및 이월 반복 사업에 대한 분석 후 적정예산 반영

❑ **선순환 체제 구축 추진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 및 재정 효율성 도모**

o **'정책-예산-실행-평가' 선순환 체제 도입에 따른 사업 평가 및 환류**

o 부서별 실국별 평가를 통해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예산사업을 zero-base **에서 재검토** 후 정비 ⇒ 부서별 총액배분 자율편성 노력

o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 편성 및 성과 평가**를 통해 합리적 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 **목적사업비 통합·축소를 통한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o 연도 계속사업 등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등 본예산 편성 후 학교 사전 안내** ⇒ 학교예산편성 및 학교교육계획 연계 수립 가능

o **목적사업비의 학교운영비 통합, 목적사업비 중복 지원 방지** 대책 강화 지속

2 예산편성 기본 원칙

가 세 입

❑ **재원별 편성 원칙**

【 자체수입 】

o 각종 자료를 기초로 세입 재원을 정확히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적합하도록 규모 산정

o 전년도 징수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산수입, 수업료 등 수입원별로 그 규모를 전망하여야 하며,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함

【 의존재원 】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계상

o 국고지원금은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

o 내시되지 않은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 중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계속사업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 편성 노력

【 지방교육채 】

o 지방교육채 수입이 지방교육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범위 내에서 계상

o 자체 발행할 수 있는 지방교육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 계상

o 승인액 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만큼만 편성·발행

❑ 자체재원 확보 노력 강화

o 시험검정사업비 등 수익자부담 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경비는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o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매각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입예산 편성에서 제외

❑ 재정사업수요 발생 시 원인제공자비용부담 원칙 적용

o 일반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동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함

나 세 출

❑ 재원배분 원칙 준수

o 교육청과 학교단위에서 집행할 재원을 구분하고, 교육청 수준에서 수행해야 할 성격의 사업을 최소화

o 민간부문이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

❑ **성과주의 지향 예산편성**

o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o **연례적으로 편성되어 온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여 당해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최적예산을 편성

o 성격이 유사하고 여러 사업부서에서 분산 추진되는 사업은 연계 강화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기능별로 묶어서 편성 관리

❑ **예·결산 분석 및 환류 철저**

o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 및 전전연도 결산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환류

o **일회성·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주력

❑ **법령사항 반영 및 의회 등의 시정요구사항 개선 추진**

o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소요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o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또는 감사기관 등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추진

3 목(그룹)별 편성 요령

❑ 2018년 예산편성 기준경비 ☞ 효율적 사업추진 제고 및 현실화

<table>
<tr><th>구 분</th><th>세 부 편 성 기 준</th></tr>
<tr><td>특근매식비*인상</td><td>o 단가 : 8,000원</td></tr>
<tr><td>일 · 숙직비</td><td>o 단가 : 50,000원</td></tr>
<tr><td>여 비
<국내여비></td><td>o 단가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td></tr>
<tr><td>업무추진비</td><td>o 단가 : 30,000원 이내</td></tr>
<tr><td>급 량 비*인상</td><td>o 단가 : 8,000원 이내</td></tr>
<tr><td>위 원 회*변경
참 석 수 당</td><td>o 단가 : 기본 100,000원, 초과 50,000원</td></tr>
<tr><td>강 사 수 당*변경</td><td>o 단가 : 2018년 교특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67쪽 교육강사수당 참조</td></tr>
<tr><td>동호회지원비</td><td>o 적정 필요 경비</td></tr>
<tr><td>심사수당

(심의·편집·운영 수당 포함)</td><td>o 단가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지급액(일급)</th></tr>
<tr><th>기본료
(2시간 미만)</th><th>초과</th></tr>
<tr><td>교장, 4급 상당 이상, 교수, 전문가</td><td>50,000원</td><td rowspan="3">-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 1일1회에 한하여 지급</td></tr>
<tr><td>교감, 5급 상당, 일반인</td><td>40,000원</td></tr>
<tr><td>교사, 6급 이하</td><td>30,000원</td></tr>
</table></td></tr>
</table>

가 인건비(100)

❑ 공무원 보수, 계약직교원 인건비 등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계약제교원 관련 지침,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등 적용

1) 편성 구분

o 공무원 인건비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하여 편성

o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사업별, 직종별로 구분하여 편성

※ 급식종사자, 과학실험보조 등 사업성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o **법령(수당 규정 및 조례)상 지급근거가 없는 수당 성격의 예산편성 불가**

2) 편성 인원

o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은 2017년 9월 현재 기준

o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은 채용실적 및 증감추세를 감안하여 편성

※ 교육공무직원 증원은 인력관리협의회 통과 후 반영

3) 정규직 인건비

o 대상 세목 : 110-01(보수), 240-02(맞춤형복지비), 250-01(직급보조비), 320-03(공무원법정부담금), 620-07(공립맞춤형복지비)

※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 담당분야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이므로 인건비에서 삭제

o 편성기준 : 관계법령(P. 55 참조)에 따라 계상

4) 계약제교원 인건비 ☞ 기간제교사, 시간제강사 등

o 대상 세목 : 110-05(계약직교원보수), 240-02(맞춤형복지비), 320-13(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 620-01(인건비지원), 620-07(공립맞춤형복지비)

o 편성기준 : 관계법령 및 해당부서 지침에 따라 편성

5)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 무기계약근로자 】

o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 인건비(상용 근로자)

-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 인건비 예산규모 산정
- 직종의 성격에 맞는 임금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 지급방식 일원화
- 연도별·단계적 지원계획 수립으로 예산부담 최소화

o 대상 세목 : 110-04(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0-02(맞춤형복지비), 320-12(무기계약근로자법정부담금), 620-01(인건비지원), 620-07(공립맞춤형복지비), 620-16(사립학교기타직인건비지원), 620-14(사립맞춤형복지비)

o 편성 기준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 및 지침, 해당부서 지침 적용

【 기간제근로자 】

o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

- **경상업무 보조를 위해 상시근무하는 일용잡급은 원칙적으로 계상 금지**
- 청사관리를 위한 일용잡급 고용은 단독청사 사용기관 또는 청사관리 기관으로서 공무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청사관리를 용역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시설부대비가 계상된 건설 사업에는 별도의 상용인부임 불인정
- 정원이 증가된 부서의 기존 상용인부는 감축을 원칙으로 함
- 지방공무원 대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채용실적 및 증감추세를 감안하여 편성

o 대상 세목 : 110-03(기간제근로자보수), 240-02(맞춤형복지비), 320-05(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620-01(인건비지원), 620-07(공립맞춤형복지비), 620-16(사립학교기타직인건비지원), 620-14(사립맞춤형복지비)

o 편성 기준 : 생활임금액 적용

❖ **2018년 생활임금액 : 일급 80,000원 / 시급 10,000원**

※ 생활임금 구체적 적용 대상 및 세부내용은 2018년 생활임금 추진계획 참조

나 물건비(200)

❑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기관의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
- 각 부서별 표준화된 운영 경비, 청사관리, 차량관리, 피복비, 각종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유류대, 일·숙직비 등

❑ 각종 교육사업 행사추진 관련 경비
-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위탁사업비, 업무추진비 등

1) 공통사항

o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 노력 강화

o 부서별 기본운영비 표준화 및 총액 배분

- 부서별 기본운영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를 표준화하여 총액 배분
- 각 부서장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자율 편성

o 경상운영비 감축 노력 강화

- 업무추진비, 인쇄비, 여비, 각종 수당 등 경상적 경비 최대한 감축
- 효율적 사업추진 및 현실화를 반영한 기준경비 인상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 노력
- 우리교육청 「조직문화개선 추진계획」('15.4.20.)에 따른 **의전문화 개선사항 준수**

【의전문화 개선】
❖ 회의 : **생수 이외의 의례적인 차, 음료, 간식 등 제공 자제** 등
❖ 행사 : 행사장 내외장식 최소화(현수막은 행사장 내부 1개 설치 원칙), 주요 내빈 가슴에 꽂는 꽃(코르사쥬) 하지 않기 등

2) 운영비(210)

o **일반수용비**는 전례답습 및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과년도 집행실태 등을 분석하여 실제 필요한 예산액만 요구

* 경상경비 증가 최대한 억제

o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집행상황에 의거 실 소요액만 계상

o **급량비**는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4]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참조

o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실적 등을 분석하여 실 소요액만 계상

o **운영수당**은 법령, 조례 등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고, 그 밖의 수당은 예산편성 기준단가 적용

o **임차료**는 실제 필요한 최소 소요액만 계상하고, 각종 회의·연수 및 행사 등은 가급적 교육청 소속기관·기타 공공기관 등의 시설을 이용

o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장비 운용 상황과 소요량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 소요액만 계상

3) 여비(220)

o 국내·외 여비는 사업계획 검토 및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절감

- 단순 자료수집, 위로·격려 차원의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교육감, 부교육감 이외의 해외출장 시에는 수행원을 인정하지 않음
-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 출장을 지양, 출장기간 및 인원 최소화

o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는 일반수용비(210-01)에 계상

o 이전비, 가족여비,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계상

o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는 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를 계상하고, 기타 부대경비(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경비 등)는 업무추진비에 계상

4) 업무추진비(230)

o 기관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경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경비)는 조례·규칙 및 훈령의 직위와 정원, 기준단가에 따라 편성

o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 대회 출전 각종 격려금, 학생·학부모 격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o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편성

- 참석인원은 최소한의 필수인원만 산정

5) 복리후생비(240)

o 교원 학술·연구모임 지원, 교직원 동호회 지원 경비는 최소 소요액만 요구

o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계상

o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교원 담임수당, 교직수당, 기타수당) 계상

o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반드시 240-03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6) 직무수행경비(250)

o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o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액으로 계상

o 기타직무수행경비

- 감사활동비는 출장 시 마다 1일 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관재활동비는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상 '특정업무경비'의 회계담당 공무원의 월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7) 연구개발비(260)

o 교육청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경비

o 연구활동비 및 연구관리비

o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감리비 포함)

다 이전지출(300)

- ❑ 예산성과금
- ❑ 교육행정기관 주관 각종 교육 및 교육행정 성과의 제고를 위한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
-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 공무원・계약제교원・무기계약제근로자・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1) 보전금(310)

【 보상금 】

o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상금 및 보상금 계상(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편성할 수 없음)

o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급식하는 급량비(매식비 단가 적용) 및 교통비(실비), 숙박비 등 최소한의 실 소요액만 계상

o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 단순 참가자는 지급 제외

o「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 배상금 】

o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o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 포상금등 】

o 예산성과금 및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해외연수비

o 교육행정기관 주관 각종 교육 및 교육행정 성과의 제고를 위한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 계상

- 직원의 사기 진작 등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의 경우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기관포상의 경우 포상계획 수립 시 포상금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설정하여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집행을 지양

2) 민간이전(320)

o 민간보조비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 가능(※ 620목에 편성)**

o 민간위탁금

- **교육청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 전액 회수하는 제 사업비

- 교육청의 위임 또는 위탁 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o 민간대행사업비

-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o 공무원·계약직교원·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등

o 연금부담금

- 교직원 본인 및 가족 사망조의금, 교직원 재해보상금

3) 자치단체이전(330)

o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중 자본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

o 누리과정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자치단체보육료보조'(330-04) 항목으로 편성하고, 3세, 4세, 5세를 구분하여 계상

4) 해외이전(340)

o 해외경상이전비

-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경비

o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라 자산취득(400)

- ❑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 건물, 기계장치, 입목죽, 사무용기기 및 집기, 교구용기기 및 집기, 도서, 예술품 등 취득비
- ❑ 법률상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

1) 토지매입비(410)

o 학교, 사무실, 창고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o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실업비 등)에 대한 보상비

o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o「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o 토지 취득 후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정지비 제외)

2) 건설비(420)

【 학교 신·증설 】

o 신설학교 교사 기준면적

- 교육부의 '연도별 학교신설비 교부기준'상의 건축연면적을 적용하되,
- 신설학교의 입지여건에 따라 건축면적 추가 사유가 발생된 경우 교육부의 '연도별 학교신설비 교부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면적은 자체 예산으로 반영
- 교육부 학교신설 예산 교부 기준면적

(단위 : ㎡)

학교급별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42학급	48학급
초등학교	7,132	8,536	10,165	11,345	13,087	14,716
중 학 교	7,698	8,916	10,397	12,346	13,827	15,345
고등학교	8,701	10,519	12,056	14,005	15,917	17,792

o 체육관 기준면적

(단위 : ㎡)

구 분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42학급~	비고
학교 신·개축	초	675	675	736	768	768	828	기준
	중	675	736	768	828	828	828	
	고	675	736	768	828	828	828	
기존학교 증축	초	810	810	883	922	922	994	20% 가산
	중	810	883	922	994	994	994	
	고	810	883	922	994	994	994	

✡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지원기준 ✡

❖ 관련근거

o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지원기준 조정(학교지원과-9584, 2011.8.18.)

o 2018~2022학년도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본방향(안)(학교지원과-11829, 2017.8.23.)

❖ 학교급별 지원기준 (1실당)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지원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비고
학생용 책·걸상	88	일반교실	2,640	2,904	2,904	792	
칠판	916	일반·특별·교무실	916	916	916	916	
게시판	315	일반·특별(초·중)	315	315	-	315	
청소도구함	240	일반·특별	240	240	240	240	
사물함	44	일반교실	1,320	1,452	1,452	396	

* 유치원 학급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지원기준 : 학급당 7,000천원 지원
(유치원 신설에 따른 내부비품비는 개교경비 지원예산에 포함)

* 기타 비품비 : 학교별 및 규모별로 다음 항목별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단일 항목만 계상

① 체육관(강당 겸용) : 30,000천원(단, 수영장 겸용 체육관은 10,000천원 추가)

② 강당(다목적 겸용) : 20,000천원

③ 다목적실 : 10,000천원

❖ 예산지원 참고사항

❍ 실당 책·걸상 지원기준

▪ **배치**지표 : 초등학교 **26명**, 중학교 **27명**, 고교(일반계) **27명**

▪ 1실당 지원기준 학생수 : 2016학년도 기준 적용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33명,** 고교(일반계) **33명**, 특수학교(급) 9명

❍ 실당 사물함 지원기준

조달청에 등록된 사물함의 경우 3인용, 6인용, 9인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어 1교실당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33명, 특수학교(급) 9명 기준

❖ 지원방법

❍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지원

▪ 초등학교 : 개교년도에 완성학급 전액 지원

- 보통교실 : 실제 편성 예정학급에 소요되는 내부비품비 및 완성학급 기준 지원액
- 특별교실 : 학교급별 내부비품 구입 소요예산 전액 지원 (전면칠판, 게시판, 청소도구함)
- 교 무 실 : 학교급별 내부비품 구입 소요예산 전액 지원 (전면칠판)

▪ 중·고등학교

① 개교년도(1차년도)

- 보통교실 : 실제 편성 예정학급에 소요되는 내부비품비 기준금액 지원
- 특별교실 : 학교급별 내부비품 구입 소요예산 전액 지원 (중 학 교 - 전면칠판, 게시판, 청소도구함) (고등학교 - 전면칠판, 청소도구함)
- 교 무 실 : 학교급별 내부비품 구입 소요예산 전액 지원 (중·고등학교 - 전면칠판)

② 2차년도 : 신입생 편성 예정학급에 소요되는 보통교실 지원 금액

③ 3차년도 : 완성학급 기준 지원액에 의한 잔액 지원

❍ 학급증설학교 내부비품비 지원

▪ 지원대상 : 학년도별 학급편성 후 학생수 증가로 학급이 증설된 학교
단, 내부비품이 기 확보되어 있는 학교는 제외

☞ 예시 : '16학년도 30학급, '17학년도 28학급, '18학년도 30학급의 경우, '16년도 내부비품 사용이 가능한 경우 미지원

▪ 지원기준 :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지원기준'에 따름

【 학교기타시설증축 】

o 학교기타시설은 대부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육관, 다목적강당, 특별교실, 복합화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으나, 지자체와의 대응투자사업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로

o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재정여건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 추진

o 복합화 사업은 시 또는 구에서 분담하기로 사전에 협의되고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

【 교육환경개선 】

노후교사 개축,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계상

o 교육현장에서 요구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 및 시민참여현장검증단의 객관적인 검증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 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o 노후교사 개축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화장실개선 등 1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소요재원을 적정하게 배분

- 노후교사 개축사업은 개축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요구
- 노후교사 개축 시에는 학생수, 교육과정, 학교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계상하되, 신설학교 기준면적 적용
-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대상을 선정
- 개축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유지관리 대상건물 우선 보수 지원

o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 대상 (11개 분야)

① 화장실개선 ② 전기시설개선 ③ 냉·난방개선 ④ 창호개선 ⑤ 외벽개선 ⑥ 소방시설개선 ⑦ 방수공사 ⑧ 바닥개선 ⑨ 도장공사 ⑩ 외부환경개선 ⑪ 기타사업 ※ 2018.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교육시설안전과, 2017.4.)

【 학교급식시설 】

급식시설 현대화 등 학교급식 환경 개선 소요경비 계상 HACCP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 소요경비 계상

o 신규 급식시설 설치학교, 지하급식실 이전 예산을 우선 요구

o 학교별 급식실 설치연도 및 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급식실 보수예산 요구

o 학교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시설·기계·기구 등 지나친 고가 기계·기구류 구입예산 요청은 미반영

o 주요 기계·기구에 대한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연도별로 예산 요구

o 연차별 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계획에 따라 우선 계상하고, 기타 사항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요구

o 시설비 지원기준, 기계·기구 지원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

※ 예산 요구 시 지원기준 및 단가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3) 유형자산(430)

o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입목죽, 전기통신기기 등의 취득비

o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복사기 등 행정사무기기 및 집기 취득비

o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 기기 및 집기 취득비

o 학교도서관 및 도서실, 기록관 등의 자본 형성적 도서 구입비

o 박물관유물 유상취득

4) 무형자산(440)

o 법률상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o 법률상의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 영업권

o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컨텐츠 취득비 등

마 전출금 등(600)

❑ 일반자치단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자금
❑ 자치단체(시 · 도교육청 포함)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금
❑ 학교회계전출금
- 공 ·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기타직인건비, 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BTL운영비, 맞춤형복지비, 유치원 학비지원(3세, 4세, 5세 학비지원) 등
-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인건비, 운영비) 등

1) 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특별회계전출금(610-02)

o 시·도교육청 간 위탁사업 및 분담금 등이 발생할 경우 통합재정 자료 추출을 위해 정확한 세입·세출과목으로 편성

- 세입 : 이전수입-기타이전수입-자치단체간이전수입-전입금(16201)

※ 민간이전수입(16100)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 세출 : 전출금 등-기타특별회계전출금(610-02)

※ 구체적 내용은 p. 25 참조(☞ 교육부 협조 요구사항임)

2) 공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620-01～620-07)

o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o 각종 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배분하여 목적사업비 비중 최소화

o 학교로 전출하는 사업예산은 반드시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

* **운영비(210) 등으로 편성할 경우 학교로 전출할 수 없음**

o 학교단위에서 직접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규모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정보화 사업에 한해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비리·부조리 사전 차단

o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o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통보

3) 사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620-08～620-16)

o 예산 편성 시 최근 수년간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적정 소요액 산정

o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각각 산출하여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지원기준 설정

o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기타학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

o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산정하되,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계상

* 학교급별, 계열별, 규모별

o 인건비 산정방법

① 공립학교 교직원의 정원과 정년을 기준으로 하되,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산정은 공무원 편성기준 적용

② 명예퇴직한 사립교원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경우 임용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임용

⑴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고 임용

⑵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고 퇴직교원 기간제교원 수준으로 보수 지급

o 운영비 산정지침

①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운영비 기준으로 하고, 학생수·교원수 등 각종 통계자료는 자체 수용계획 및 전년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소요액 산정

② 장학금 및 수업료 면제액은 공립학교 수준과 균형 유지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

o 입학금, 수업료 및 법인전입금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산출

o 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은 의무 전입토록 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법인은 연차적 부담계획을 제출받아 부담 유도

【 보조결정 및 정산 방법 】

o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운영비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인건비에 충당하여 운영비 지원액을 최소화

o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보조하며, 인건비는 정산하고 운영비는 정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자구노력 유도 】

o 토지, 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 권장

o「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따로 적립하는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이를 제외함

o 학교운영비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

-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액 중 학교운영비는 경상비보조의 성격으로 당해연도의 학생들을 위하여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
-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결함지원의 효율성 제고

바 예비비 및 기타(700)

❑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 교육청이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보조금 반환

4 투자사업비 편성기준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

가 공통사항

1) 모든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구분이 명확하고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되, 2018년도 완공예정 사업을 우선적으로 요구

2) 학교신설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예산요구 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상비 및 당해연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예방

3) 완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중 실시설계가 완료된 대규모 사업은 필요할 경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

4) 모든 시설사업은 지원 대상학교 및 학교별 구체적 지원내역을 확정하여 계상

5) 학교신설 사업은 토지매입비(보상비 포함)를 우선 요구

6) 투자계획 수립, 예산요구 전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중복 투자, 예산부족 등을 예방

7)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시 또는 자치구에서 분담하기로 사전에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투자심사 후 확정된 사업만 예산 요구)

8)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대상 및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포괄성 예산은 면밀한 검토 후 요구

9) 학교의 시설기준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설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시설기준 및 예산편성단가 조정안 적용

o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5963호)

o 각급학교 교구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2-1,2,3,4,5,6호)

나 계속사업

1)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 전망과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보완한 후 예산 요구

2) 예산에 설계비 등이 계상된 사업도 학생수용계획 변동 여부, 사업 시행 필요성,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화 도모

3) 사업계획 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 소요액만 요구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는 원칙적으로 요구 불가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비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부서와 협의 후 요구

다 신규사업

1) 투자심사 대상 주요 신규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 요구

2) 주요 신규사업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전문가의 자문,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5 건전재정 운영 지침

가 적정 재정규모 유지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액은 다음 범위 내로 제한

구 분	비 율	비 고
일 시 차 입 금	전체예산의 10%이내	전년도 수준 유지
채무부담행위액	전체예산의 3%이내	전년도 수준 유지

나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

1)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철저

o **업무추진비성 경비의 다른 비목으로의 부당 편성 금지**

- 편성기준 외 기타 사업비(급량비 등)에 편법 편성 금지

o 축의·부의금품, 격려금품, 선물 등의 경우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준수

2) 인쇄비, 각종 수당 및 직무연수 경비 등 절감 편성

3) 보상적 성격의 국외여비 편성 지양

4) **사업추진에 따른 불요불급한 비정규직 인건비(인원, 근무일수) 편성 지양**

5) 기타 경상적 경비 최대한 절감 편성

다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 편성 금지

1) 보전금(보상금, 배상금, 포상금등)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

2) 격려금품, 위로금품, 협의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의 보전금 편성 금지

라 자금운용 최적화

❍ 자체 자금운용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자수익 제고 노력 철저

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편성 및 집행 철저

1)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0.1%이하로 편성

2) 지원 대상기관 :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3) **예산 운영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억제**

o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예산 규모가 크고, 명확한 집행기준이 미흡하여 기관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됨

o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복지지원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고,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4) 예산과목

o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 경상교육지원사업비(28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470-01)

o 각급학교

* 학교특별교육지원비(공립, 620-06),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13)

바 재정 분석·진단 강화

1)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착수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사업효과의 관점에서 관리하고 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시 직접 반영

2) 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환류 철저

Ⅲ.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1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가 인건비

구 분		지 급 근 거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3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수 당		☞ 아래 '공무원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괄호( ) 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 여 수 당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수당 제6조의2 (제5조의2)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제7조 (제6조)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 제7조의2 (제6조의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제10조 (제10조)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수당 제11조 (제11조)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수당 제11조의3 (제11조의2)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2조 (제12조)
	특수근무수당 등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3조 (제13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4조 (제14조)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수당 제14조의2 (제14조의2)
	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5조 (제15조)
		야간근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6조 (제16조)
		휴일근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7조 (제17조)
		관리업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7조의2 (제17조의2)
	실비변상 등 (실비보상 등)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 제18조 (제18조)
		명절휴가비	공무원수당 제18조의3 (제18조의3)
		연가보상비	공무원수당 제18조의5 (제18조의5)
		직급보조비	공무원수당 제18조의6 (제18조의6)

2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한 기준경비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부 훈령 제225호. 2017.8.25. 제정〕
-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 예규 제10호. 2014.4.1〕

가. 예비비

❑ 기준액(비율)

기준액(비율)	비 고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

나. 일시차입금

❑ 기준액(비율)

기준액(비율)	비 고
전체예산의 10%이내	전년도 수준 유지

다. 채무부담행위액

❑ 기준액(비율)

기준액(비율)	비 고
전체예산의 3%이내	전년도 수준 유지

라. 지방교육채

❑ 기준액(비율)

기준액(비율)	비 고
전전년도 교특회계 세입 결산액 대비 8%이하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적용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국가부담수입+지자체전입금+자체수입+주민부담금)-(국고보조금+학교신설교부금)

※ 지방교육채 수입이 지방교육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범위 내에서 계상

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 경비성격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 사용 불가

❑ 기준액(비율)

2018년도	비 고
본예산액의 0.1% 이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945, 2017.9.11.) 적용

바.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3조 관련

1)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경비성격

o 시·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o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및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기 준 액

o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

o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구 분	한도액 기준	비 고
o 서울·경기 ○ 기타 시·도 ○ 제주	o 예산규모의 0.09% 이내 ○ 예산규모의 0.12% 이내 ○ 예산규모의 0.31% 이내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급 이상 편성(본청 및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하 편성 불가)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o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o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 시·도교육청(본청)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까지	301~600명까지	601~800명까지	801명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까지	401~1,000명까지	1,001명 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주 1) 적용대상 :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 (각급 학교 제외)

2) 적용기준 :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예산편성년도. 10.1 기준) 및 교육공무직원 총 정원수(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및 인력관리협의회 통과 인원)

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o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o **기 준 액**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
-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단일기관(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 : 1개과로 인정(예산편성년도. 10.1 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월 100,000원	
정원 15인이하 실·과	월 250,000원	
정원 30인이하 실·과	월 350,000원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5,000원 추가	

4) 직책급 업무추진비

o 경비성격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o 기 준 액

(단위 : 천원)

구 분		직 위	월 액	연 액
정무직	시·도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감)	기 관 장	900 (1,025)	10,800 (12,300)
행정직	1 급	기 관 장 보 조 기 관	750 700	9,000 8,400
	2·3급	기 관 장 보 조 기 관	650 600	7,800 7,200
	4 급	기 관 장 보 조 기 관 복 수 직	400 350 150	4,800 4,200 1,800
	5 급	시·도교육청 과장 기 관 장 보 조 기 관	350 150 100	4,200 1,800 1,200
	6·7급	기 관 장 보 조 기 관	100 50	1,200 600
교 원	유·초·중등·특수학교장		250	3,000

※ 교육전문직 기관장은 일반직상당 직급으로 계상

주 1) 가산금 : 각급 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3,000원** 가산
(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 학급 및 분교 포함)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액 직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5) 특정업무 경비

o **경비성격 :**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o **지급대상 :** 지급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직무 전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o **기 준 액**

(단위 : 월, 원)

구 분	지 급 대 상 자	지급액
감사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4급 이하)	100,000 80,000
학생수용	·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 담당공무원(과장 이하)	100,000
예산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 교육지원청은 과장 포함 3명 이내	150,000
평생교육(학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80,000 60,000
학교보건 (교육환경보호)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80,000 60,000
교원 · 공무원· 학교회계직원 단체	· 본청 교원 · 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담당과장 · 본청 교원 · 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담당공무원(5급 이하)	80,000 60,000
회계담당공무원	· 본청 복식부기, 본청 및 교육지원청 회계 · 계약 담당 공무원(5급 이하)	60,000
여론 · 동향	· 본청 여론 · 동향 전담공무원(5급 이하)	100,000
법무담당	· 본청 법무업무 담당과장 · 본청 법무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80,000 60,000

- 지급인원 : **지급대상자 중 교육감이 정한 자**

주 1)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인원은 직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하며,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

2) 학생수용(학교설립), 복식부기 또는 회계 · 계약 담당공무원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담당(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3) 여론 · 동향 전담공무원은 본청 단위로 공보팀(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담당(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기준경비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76호, 2015. 10. 30., 일부개정〕
- 우리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세출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

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경비성격

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기준액(연간금액)

(단위 : 천원)

기 관 별	직 위 별		편성한도액	비 고
본 청	교 육 감		190,000	
	부교육감		95,000	
	기획조정실장		17,000	
	국 장		14,000	
교육지원청	교 육 장		24,000	
	국 장		4,000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포함)	기관장	2, 3급	7,000	
		4급	5,000	
		5급	4,000	
	총무부장, 시설관리부장		3,000	

※ 직속기관 총무부장, 시설관리부장은 '부' 아래 '과(담당관)' 직제가 없는 경우 제외

나. 위원회참석수당

❑ 경비성격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 지급단가(1일)

기본료	초과	비 고
100,000원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지 급 제 외 대 상	비 고
공무원(소속직원포함)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본청 소속으로 봄)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할 수 없음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 2018년 변경
☞ 예시 1) 본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 공무원(직원포함)이 참석했을 경우 : 지급 불가 2) 본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학교 소속 공무원(직원포함)이 참석했을 경우 : 지급 가능 3) 교육지원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학교 소속 공무원(직원포함)이 참석했을 경우 : 지급 가능	

다. 심사수당 (심의・편집・운영수당 포함)

지급대상	지급액 (일급)		비 고
	기본료 (2시간 미만)	초 과	
교장, 4급 상당 이상, 교수, 전문가	50,000원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교감, 5급 상당, 일반인	40,000원		
교사, 6급 이하	30,000원		

라. 일·숙직수당

o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

o **기준액(1인기준)**

구 분	단 위	단 가	계상일수	연 액
일 직 비	1일당	50,000원	119일	5,900,000원
숙 직 비	1야당	50,000원	365일	18,250,000원

【 계상원칙 】

1) 동일건물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있는 경우는 통합 운영
2) 직원 15인 이하인 기관은 1인 근무
3) 수위실・기계실・보일러실 근무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4) 토요휴무제에 따른 일직비 포함

마. 합숙생활지도수당

o **계상원칙** : 대상학교별 2명
(단, 기숙사 학생수 300명 초과시 2명 추가)

o **기준일수** : 연 245일

o **지급단가**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바. 시험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4,000원	
	주관식	과목당	50,000원	
② 채점비	객관식	10문제당	15원	* 감금수당은 연속 12시간이상 감금상태에서 문제출제, 선정, 편집·편찬 및 관리를 담당한 경우에 한하되, 전체 감금시간을 24로 나눈 일수로 지급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관식 (기본료) (초 과)	10부까지 부 당	30,000원 1,000원	
③ 문제선정·심의비		과목당	50,000원	
④ 문제편집, 편찬비		일 당	15,000원	
⑤ 시 험 감독비 * 2018년 인상	평 일	4시간미만 4시간이상	40,000원 50,000원	
	휴 일	4시간미만 4시간이상	50,000원 70,000원	
⑥ 면접, 실기 채점비 * 2018년 인상	5급	4시간미만 4시간이상	50,000원 60,000원	
	6급이하	4시간미만 4시간이상	40,000원 50,000원	
⑦ 감금수당		일 당	40,000원	

※ 시험검정사업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하여 최대한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별도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평가업무와 관련된 시험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사. 교육강사수당 * 2018년 지급대상 세분화 및 단가 인상

o 경비성격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o 기준액(시간당)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단 가	비 고
특별강사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료 300,000원 초 과 200,000원	* 강사료 할증 · 101~200명 : 20% · 201~300명 : 30% · 301명 이상 : 50% * 기본료는 1시간 미만 * 초과는 기본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 초과 강의시간 산출 · 30분 미만 : 미포함 ·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특별강사2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 특별강사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전·현직공무원, 대학학장)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기본료 200,000원 초 과 150,000원	
일반강사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 (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 4급(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 유·초·중등학교장 ○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료 160,000원 초 과 90,000원	
일반강사2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급(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기본료 100,000원 초 과 60,000원	
일반강사3	○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 ○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 1,2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료 80,000원 초 과 50,000원	
분임지도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기본료 30,000원 초 과 2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료 30,000원 초 과 10,000원	

※ 연수전문기관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청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 적용 가능

주 : 1)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공무원은 210-06, 민간외래 강사는 310-01 과목에 편성)

2) 소속 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 불가)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실비의 교통비 제외)은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세부내용은 p.163 참조)

아. 원 고 료

구 분		단 위	단가(원)
원 고	국 문 · 외국어	o 매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강의 원고의 경우 시간당 3.5매 이내 * 원고지에 작성 시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4매 이내로 환산	14,000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자료	o 면 * 강의 시간당 5면 이내 * 최대 20면까지 인정	10,000
	자막제거	o 매	10,000
녹음제작		o 10분(40매)	100,000
사이버강의 콘텐츠제작	동영상	o 10분(1시간 수업용)	150,000

자. 교원연구비

o 경비성격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비용

o 지급대상 : 유·초·중·특수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원

o 기준액(월액) (단위 : 원)

구 분		유·초등 교원	중등교원	비고
교 장		75,000	60,000	※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준용**
교 감		65,000	60,000	
수석교사		60,000	60,000	
보직교사		60,000	60,000	
교사	5년이상	55,000	60,000	
	5년미만	70,000	75,000	

부 록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 관련)

〔별표 3〕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5조제2항 관련)

〔별표 5〕 세입·세출예산의 편제(제5조 관련)

3.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4.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변경내용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30.] [교육부령 제76호, 2015.10.30.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시·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산수입과 수업료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존재원) ①시·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채)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제8조(기준경비) ①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시·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부칙 <제76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세출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교육청이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17.8.25.] [교육부훈령 제225호, 2017.8.25., 제정]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28호)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96호)을 **통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설정하여 시·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에 적용한다.

제3조(기준경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25호, 2017.8.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원가통계목명 교직수당가산금9)”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28호)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96호)은 폐지한다.

[별표 1]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제3조 관련)

1.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시·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및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② 기준액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범위내에서 자율결정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구 분	한도액 기준	비 고
○ 서울·경기	○ 예산규모의 0.09% 이내	
○ 기타 시·도	○ 예산규모의 0.12% 이내	
○ 제주	○ 예산규모의 0.31% 이내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급 이상 편성(본청 및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하 편성 불가)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기 준 액(1인당 연간금액)

- 시·도교육청(본청)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까지	301~600명까지	601~800명까지	801명이상
1인당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까지	401~1,000명까지	1,001명 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주』 1) 적용대상 :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각급 학교 제외)

2) 적용기준 :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예산편성년도.10.1기준)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3. 직책급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 천원)

구 분		직 위	월 액	연 액
정무직	시·도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기 관 장	900 (1,025)	10,800 (12,300)
행정직	1 급	기 관 장 보조기관	750 700	9,000 8,400
	2·3급	기 관 장 보 조 기 관	650 600	7,800 7,200
	4 급	기 관 장 보 조 기 관 복 수 직	400 350 150	4,800 4,200 1,800
	5 급	시·도교육청 과장 기 관 장 보 조 기 관	350 150 100	4,200 1,800 1,200
	6·7급	기 관 장 보 조 기 관	100 50	1,200 600
교 원	유·초·중등·특수학교장		250	3,000

※ 교육전문직 기관장은 일반직상당 직급으로 계상

주 1) 가산금 : 각급 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 시마다 **월 3,000원** 가산 (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중·고 학급 및 분교 포함)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액 직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② **기 준 액**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

○ 기관장이 4급이하인 지방단일기관(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 : 1개과로 인정(예산편성년도.10.1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월 100,000원	
정원 15인이하 실·과	월 250,000원	
정원 30인이하 실·과	월 350,000원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5,000원 추가	

※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5. 특정업무 경비

① 경비성격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단위 : 월, 원)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액
감사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100,000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4급 이하)	80,000
학생수용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 담당공무원(과장 이하)	100,000
예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150,000
평생교육(학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80,000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60,000
학교보건(교육환경보호)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80,000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60,000
교원·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및 담당	·시·도교육청 교원·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담당과장	80,000
	·시·도교육청 교원·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담당공무원(5급 이하)	60,000
회계담당공무원	·시·도교육청 복식부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회계·계약 담당공무원(5급 이하)	60,000
여론·동향	·시·도교육청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 이하)	100,000
법무담당	·시·도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과장	80,000
	·시·도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60,000

○ 지급인원 : 지급대상자 중 교육감이 정한 자

주 1)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인원은 직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하며,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

2) 각급 기관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이 적정 인원을 편성

3) 학생수용(학교설립), 복식부기 또는 회계·계약 담당공무원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담당(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4)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보팀(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담당(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별표 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 관련)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정
10000 이전수입					
	1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1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101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보통교부금
			11102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교부금
		11200 국고보조금			
			1120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1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100 법정이전수입			
			12101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지난년도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의 과년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
			12102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난년도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의 과년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담배소비세전입금)
			12103 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도세 전입금
				지난년도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의 과년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시도세전입금)
			12104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지난년도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과년도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21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따라 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12106 교육급여보조금	광역자치단체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기초자치단체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정
		12200 비법정이전수입			
			1220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광역 공립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금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광역 급식비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 경비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광역급식시설·설비 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광역교육정보화 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광역 교육과정 자체 개발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경비
				광역 교육과정 운영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경비
				광역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립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광역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광역 기반시설 부담금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기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220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부담금	○도서관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급식비 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급식시설·설비사업 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 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경비
				교육과정 운영사업 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경비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립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교육환경개선사업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정
				보조금	환경개선사업 경비
				기반시설 부담금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기타 보조금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2203 국고지원전입금	국고지원전입금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12204 기타지방교육세 전입금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추가 확보되는 전입금
	16000 기타이전수입				
		16100 민간이전수입			
			16101 기부금	일반기부금	○일반 기부금(용도 미지정기부금)
				특정기부금	○연구목적 이외의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연구기부금	○연구목적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민간부담금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으로 받는 자금
			16102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수입 ○기관, 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정보화 촉진기금 등)
		162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6201 전입금	전입금	○자치단체 간 전입금
20000 자체수입					
	21000 교수-학습활동수입				
		21100 기본적교육수입			
			21101 입학금	입학금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학교급별로 계상)
			21102 수업료	수업료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학교급별로 계상)
			21103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 입학금 수입
			21104 지난년도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수입
		21200 선택적 교육수입			
			21201 기숙사 및 급식	급식비	○단체급식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기숙사비	○기숙사 사용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21204 평생학습 수입	수강료수입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 수입
				기타평생학습수입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를 제외한 수입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정
	22000 행정활동수입				
		22100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2101 사용료수입	토지사용료수입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시설물사용료수입	○시설물 사용료 수입(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입장료수입	○공연장, 과학관, 어린이 회관 등의 시설물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수입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사용료수입
			22102 수수료수입	입학수험료	○학교입학수험료징수조례에 의한 입학수험료 수입 및 전형료
				검정수수료	○자격검정 및 채용시험, 기타 검정시험 수수료수입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수입
				증지판매수입	○수입증지조례에 의한 증지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독촉수수료 등
		22200 특별부과금 및 분담금			
			22201 특별부과금	특별부과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와 제20조제13호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특별부과금을 계상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는 특별부과금
			22202 분담금	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분담금을 계상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는 분담금
	23000 자산수입				
		23100 자산 임대수입			
			23101 임대료수입	토지임대수입	○대지, 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임대수입
				건물임대수입	○건물에 대한 임대 수입
				기타자산임대수입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재산 임대 수입(물품 임대 포함)
		23200 자산매각대			
			23201 토지매각	토지매각	○토지(임야) 매각수입
			23202 건물매각	건물매각	○건물매각수입
				구축물매각	○공작물 매각수입
			23203 기계장치매각	기계장치매각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을 제외한 기계요소공작기계, 산업기계, 의료화학분석기기, 물리시험측정기기, 기타 실험장비, 기타잡기기 및 교육연구용교구매각수입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정
			23204 기타유형자산매각	전기통신기기매각	○ 전기통신기기 매각수입
				사무용기기 및 집기매각	○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및 기타집기비품매각수입
				도서매각	○ 도서매각
				선박매각	○ 선박매각
				항공기매각	○ 항공기매각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박물관유물매각	○ 박물관유물매각
				입목매각	○ 입목매각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23205 무형자산매각	특허권매각	○ 특허권매각 수입
				저작권매각	○ 저작권매각 수입
				소프트웨어매각	○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컨텐츠매각 수입
				실용신안권매각	○ 실용신안권매각
				의장(디자인)권 매각	○ 의장(디자인)권 매각
				상표권매각	○ 상표권매각
				상호권매각	○ 상호권매각
				전신전화보증금 회수	○ 무체재산에 포함된 전신전화 보증금에 대한 회수분
				기타무형자산매각	○ 위 항목을 제외한 기타무형자산 매각
	24000 이자수입				
		24100 이자수입			
			24101 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	○ 정기예금이자 수입
				기타예금이자	○ 적립금이자수입 및 정기예금이자수입을 제외한 이자 수입 ○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세입조치 시 이자 수입을 포함
	25000 적립금수입				
		25100 적립금처분수입			
			25101 감채기금	감채기금	○ 감채기금 적립금
			25102 기타기금	기타 기금	○ 위 이외의 기타기금
		25200 적립금이자수입			
			25201 적립금이자수입	적립금이자수입	○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 단, 적립금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적립금 처분수입으로 계상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정
	26000 금융자산회수				
		26100 융자금원금회수			
			2610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단기민간융자금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및 기타 민간 부문에 대하여 유상으로 빌려준 자금 회수
				장기민간융자금	
				학자 대여금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대여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에 대한 회수액(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별도 계상)
		26300 보증금 회수			
			26301 보증금회수	단기임차보증금회수	○단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장기임차보증금회수	○장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단기기타보증금회수	○단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장기기타보증금회수	○장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27000 기타수입				
		27100 제재금수입			
			27101 변상금	공유재산변상금수입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기타변상금수입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기타 변상금 수입
			27102 위약금	위약금수입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27103 연체료	공유재산연체료수입	○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기타연체료수입	○기타 연체료 수입
			27104 과태료	과태료수입	○법령 및 조례에 의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23조 규정 등) 과태료 수입
			27105 기타제재금수입	기타제재금수입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제재금 수입
		27200 기타수입			
			27201 생산물매각대	생산물매각대	○생산물 매각에 따른 수입
			27202 동식물매각대	동식물매각대	○동식물 매각에 따른 수입
			27203 그외수입	그외수입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27300 과년도수입			
			27301 과년도수입	과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 과년도수입
	30000 차입				
	31000 지방교육채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정
		31100 지방교육채			
			31101 지방교육채증권	장기지방교육채증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지방교육채증권발행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31102 금융기관차입금	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31103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40000 기타					
	41000 전년도이월금				
		41100 순세계잉여금			
			41101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200 보조금사용잔액			
			4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202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광역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기초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204 기타지원금사용잔액	기타지원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타지원기관에 반납 하여야 할 금액
		41300 이월금			
			41301 전년도이월사업비	명시이월비	○ 전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사고이월비	○ 전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계속비이월	○ 전년도에 이월된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별표 3]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제5조제1항 관련)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 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050]교육						
	[051]유아및초중등교육					
		[01]인적자원운용				
			[01]정규직인건비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01]교원인건비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기타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원 등의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02]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행정지원기관 소속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등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03]교육전문직원인건비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02]비정규직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인건비	
				[01]계약제교원인건비	○기간제교사, 시간제강사 등 인건비 ○기타직법정부담금, 기타직 퇴직금 ○계약제 및 시간제 교원 인건비, 퇴직수당 등 ※ 인턴교사 등 사업성 경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02]계약제직원인건비	○지방공무원 출산휴가 등 행정대체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장애인고용부담금 ○공공기관 근무 인턴 인건비 ※ 급식종사자, 과학실험보조 등 사업성 인건비(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등 포함)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03]교원역량강화	○교원 연수 등 교원의 역량 강화 경비	
				[01]교원연수지원	○교원 연수 여비(국내·국외여비) 등 연수지원 경비 -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원연수, 전문직연수, 교원국외연수, 교원정보화연수 등 ○교원장기국외유학 연수 등 교원의 국외연수 경비 ○교원의 ICT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제 경비 ○교원의 각종 연찬회 운영에 따른 제 경비(교장 및 전문직연찬회 등) ○자율연수	○
				[02]교원연수운영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 등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운영 제반경비 - 교원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사이버연수	
				[04]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연수 등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경비	
				[01]지방공무원연수지원	○지방공무원 연수 여비(국내·국외여비) 등 연수지원 경비 ○관리자 장기국외연수 및 고급간부과정 국외연수 등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경비 ○직원능력개발비,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등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교육지원청자체연수 ○지방공무원연찬회, 교육행정워크숍, 직장교육 등	
				[02]지방공무원연수운영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 등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운영 경비 - 지방공무원 일반연수, 지방공무원 사이버연수 등	
			[05]교원인사관리		○초·중등 교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01]교원임용관리	○교원 및 전문직 임용시험 관련 제반경비 - 초·중등 교원, 전문직 임용시험 관련 경비 ○사립교원 특별채용 관련 제반경비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험 ○자격연수 대상자 시험관리	○
				[02]교원인사관리	○교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교원 훈·포장 전수식 등 각종 표창 행사, 각종 교육상 운영 ○초빙·공모제 운영비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제 경비 ○사립교원 인사교류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교원 상훈관리 ○교원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교원평정업무 지원	
				[03]순회교사제운영	○겸임순회교사, 보건교사및영양(교)사, 전문상담 및 치료 교사 등 순회여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의 의한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 수당	
			[06]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01]지방공무원임용관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제반경비 - 지방공무원 공채 및 특채, 승진시험 관리	
				[02]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지방공무원 퇴임(정년퇴임 행사 등) 및 상훈관리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07]비정규직인사관리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01]비정규직인사관리	○비정규직 임용 관련 제반 경비 ○비정규직 업무관리(학교회계직원 포함) ○비정규직 관련 워크숍 및 연수관련 경비 ○비정규직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08]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진작 경비	
				[01]교직원복지지원	○각종 동호회 운영 지원 경비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체육대회, 스승의날, 예술제 등) 관련 경비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교육장학회 장학기금 관리 ○교직원 부조금여(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소요 경비 ※ 정규직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제외(정규직인건비에 편성)	
				[02]교직원복지대여	○교직원 무이자·저리 대여사업 이차보전 ○교직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 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09]교직원단체관리		○교직원 단체 교섭 및 협력 등을 위한 경비	
				[01]교직원단체관리	○교원단체 및 공무원단체 관리에 필요한 경비 ○비정규직노조단체 단체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공무원노사관계 교육관련 경비 ○교원, 공무원, 비정규직 단체 교섭 및 협약추진 경비	○
		[02]교수-학습활동지원				
			[01]교육과정개발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 제반 경비	
				[01]교육과정운영	○모델학교 등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제 경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경비 ○역사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 경비 ○대학교육 선이수 과정 운영 ○교육과정연수홍보 ○개정교육과정 운영 및 활용연수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개발 ○교육과정연구 및 심의위원회 운영 ○수업혁신지원단 운영 ○교육과정컨설팅 지원단 운영 ○자유학기제 운영	
				[02]수준별교육과정운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수준별 이동강사 운영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교재개발보급 등 관련 제 경비	
				[03]교과자료개발보급	○인정도서개발보급에 필요한 제 경비 ○우리고장바로알기 교재, 사회과지역교과서 개발 보급 ○무학년교과 수준별프로그램 개발 ○각종 교육자료 개발 보급	
				[04]창의인성교육운영	○창의인성교육 및 창의경영학교 지원 경비 ○예술교육과정 및 강사 운영, 예술교육 학습보조인턴 교사 등 지원 ○창의적체험활동 등 지원경비 ○사교육비경감 대책 추진	○
				[05]특색교육과정운영	○시·도 자체 특색학교 운영(혁신학교, 행복학교, 국제학교 등) ○기타 시도 자체 특색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연수, 연구발표 등 ○학교 1특색사업 운영 등 특색사업 운영관련 제 경비	
			[02]학력신장		○학생 학력신장 제반 경비 ○학습부진아 지도 방법 개선지원비 등	
				[01]교실수업개선지원	○열린교육운영, 교실수업개선 등을 위한 지원 경비 ○교실수업개선 실천연구대회 및 학습지도연구대회 운영 경비 ○수업분석실 운영 ○우수교사인증제 운영 ○연구대회운영지원 ○수업선도교사 관리 운영 ○교육과정운영 및 수업방법 개선 등 특별연구교사 관리 운영	
				[02]학력향상지원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보충학습 경비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경비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경비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재이수 등 운영경비 ○특별보충과정 강사 운영 등 제 경비 ○각종 경진대회 및 경연대회 등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03]수업지원장학활동		○유·초·중등 장학활동 지원 제반 경비	
				[01]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각종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장학행정협의회 운영 ○각종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제반 경비 ○학교단위 장학활동 공모제 운영 ○ICT 활용교육 장학지원제 운영 ○자율장학운영 ○컨설팅장학지원	
				[02]수석교사제운영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 수석교사 수당, 시간감축수당, 수석교사 멘토링제 운영, 운영비 지원, 연찬회, 워크숍 경비	○
			[04]연구시범학교운영		○각종 연구시범학교 지원 및 관리 경비	
				[01]연구시범학교운영	○교육부 요청 연구시범학교 운영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시·군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기타 기관 과제수행 연구학교 운영 ○각종 연구실험시범학교 지원 및 운영 관련 제반 경비	
			[05]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교과교육 수업 연구회 지원 등 경비	
				[01]교과교육연구회지원	○자생적연구서클지원, 현장교육연구활동지원, 교과교육 연구회운영 등	
			[06]유아교육진흥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운영 등 유아교육 지원 경비	
				[01]유아교육지원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지원활동 지원 ○유아교육정보자료실운영,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보급 ○유치원 학부모 교실 운영 ○유치원공동체험학습 운영, 지역별유아교육네트워크 지원 ○교육자료전시회 및 연찬회 운영 ○유치원 평가운영비 및 유치원 교원평가 ○유아교육활성화 추진 등 ○유아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직속기관인 경우 기본 운영비는 직속기관운영에 편성)	
				[02]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설치 및 운영 ○방과후과정반 학급보조원 운영 ○세대간지혜나눔사업 및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운영 등 학급보조자원봉사자 운영 ○방과후과정반 환경개선비 ○엄마품온종일 돌봄유치원 운영 ○에듀케어 운영 및 자원봉사단 운영 ○야간돌봄교실 운영 ○탁아방 운영 ※ 유치원 방과후과정반비 지원은 제외(누리과정지원에 편성)	○
				[03]유치원교육여건개선	○유치원환경개선 지원(단설유치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편성), 살내외 종합놀이기구 시설 지원 ○교원협의실 환경개선 ○교재교구비 지원 ○유치원 CCTV 설치 ※ 사립유치원 제외	
				[04]사립유치원지원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 등 ○사립유치원역량제고 사업 ○사립유치원 교육여건개선비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등 처우개선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 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07]특수교육진흥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지원 및 관리 경비	
				[01]특수교육운영	○특수학급 운영 및 지원 경비 ○특수학급 증설(운영)비, 병원학교(급) 설치 운영 ○특수순회교육운영 및 순회치료교육 운영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 ○특수학교 수준별 교재 제작	○
				[02]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특수교육 각종대회 운영 지원 ○장애인식개선 지원	
				[03]특수교육복지지원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지원 ○특수교육보조원운영[특수교육보조원, 통학차량보조원, 사회복무요원(특수교육보조) 등] ○장애재활센터 운영	○
				[04]특수교육여건개선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특수학급 신·증설 등(※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신·증설하는 리모델링비)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08]영재교육활성화		○영재교육 기관운영 및 추진에 필요 제반 경비	
				[01]영재교육운영	○과학영재교실 및 영재학급(지역공동, 단위학교) 운영, 사이버영재학급 추진 등 ○영재교원연수 지원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판별도구 등 개발·확충 등 ○영재교육 홍보 등 영재교육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업경비 ○영재교육 연수 및 연구회 지원 ○영재교육 협력사업 지원	○
				[02]영재교육원운영	○영재교육원 기본시설, 기자재확충, 운영비 등 지원 ○과학영재학교 지원 ○기숙형 영재교육원 운영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09]독서교육활성화		○학교도서관활성화 등 독서교육활성화 경비	
				[01]독서논술교육활성화	○독서논술관련 자료집 발간 및 자료 제작, 독서동아리 및 연구회 지원 등 ○각종 독서 관련 행사 지원 ○전국도서관대회 운영 등 ○독서 논술활성화 지원	
				[02]학교도서관운영지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비 지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학교도서관 학부모 도우미(명예사서) 운영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독서관련 자료집 발간 및 대회운영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10]외국어교육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제반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 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01]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 운영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원어민교원 초빙 항공료, 주택임차료, 교육경비 등) ○ 원어민교원 인건비 ○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강사선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 제2외국어보조강사 지원	○
				[02]외국어교육활동지원	○ 영어체험 캠프 운영(학생영어체험캠프운영) ○ 영어교육활동 경연대회 운영 - 영어교육활동경연대회운영, 기타체험행사 ○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운영 ○ 거점영어센터(영어타운 및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TaLK) 프로그램 ○ 국제교류활성화 지원 ○ 영어학력 인증제 운영 경비	○
			[11]과학교육활성화지원		○ 발명교육운영 및 과학교육전시관운영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제반 경비	
				[01]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 과학교육운영,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 과학실험보조원, 과학실험인턴교사 운영 ○ 과학교육장학활동 지원 ○ 과학분야연수운영	
				[02]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 학교 및 학생 과학동아리 운영 ○ 발명교실 및 환경교육 운영 ○ 탐구학습관 운영, 이동과학차, 과학관 운영 ○ 관찰체험학습장 운영, 자연생태학습장 운영 ○ 과학전람회 및 과학경시대회, 과학탐구대회 운영 등 과학행사 지원 ○ 천체교육원, 과학교육원 및 자연학습장 등을 위한 사업경비 ○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03]과학교육여건개선	○ 과학실험실현대화 및 탐구학습관 현대화 추진 등	
			[13]특성화고교육		○ 특성화고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 특성화고 장학금은 [학비지원]으로 편성	
				[01]특성화고운영지원	○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등 특성화고 학생기능신장 지원 ○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지원 ○ 자영농수산과 운영	
				[02]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및 학과개편 기자재 확충비 지원 ○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경비 ○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및 운영 경비	
				[03]마이스터고운영지원	○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제반 경비(기숙사비, 산학겸임교사 및 사감 인건비, 급식비 등)	○
				[04]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 특성화고 창업지원 사업, 특성화고 학교기업 지원 ○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사업, 해외인턴십 지원 ○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비 지원, 현장실습 운영지원 등 ○ 산학협력 교육과정운영 지원, 산학협력 취업지원센터 운영	○
			[14]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 교육용 컴퓨터 보급 등 학교정보화 사업 제반 경비 ※ 스마트교육 지원 경비 제외	
				[01]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 교육용·교원용 컴퓨터 보급, 컴퓨터실 확충 ○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 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어학실 및 방송실 장비 확충 ○멀티미디어실 설치 ○첨단 광학매체 보급 ○인터넷 학습환경 구축 ○노후 기자재 수리 및 정비비	
				[02]학내전산망구축	○학내전산망 및 DB서버 구축 ○학내전산망 유지보수 ○학교홈페이지 관리	
			[15]ICT활용교육		○ICT 활용교육 지원 제반경비	
				[01]ICT활용교육지원	○ICT 활용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학생 컴퓨터 활용 인증제, 정보올림피아드 운영, 사이버마을공부방 ○ICT 활용교육경진대회 및 연구대회 ○이러닝 박람회 및 이러닝 고도화 지원	
				[02]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 지원	○인터넷교육방송 운영 경비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경비	
				[03]스마트교육지원	○IPTV 활용교육서비스 지원 ○클라우드 기반조성 등 스마트교육 관련 제반 경비	
			[16]체육교육내실화		○학교별육성종목지원 등 체육 교육 제반 경비	
				[01]학교체육활성화지원	○기초체력향상프로그램 개발 ○기본종목 중심학교 운영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 관련 제반 경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스포츠강사 지원 ○각종 체육동호회 지원 ○생활체육관련 지원 제 경비	○
				[02]체육육성종목지원	○전문체육코치운영 ○체육선수 육성 경비, 체육특기자 선발 ○정책 및 특별종목 지원 ○연계육성팀 창단 지원 ○신인발굴 및 전지훈련, 선수훈련용 버스 운영	○
				[03]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체육장비 및 시설 확충비 ○학교체육 육성종목 시설 보수 및 확충비 ○다양한 운동장 조성 사업	
			[17]특별활동지원		○정규교육과정 중 특별활동지원 제반 경비	
				[01]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학생종합학예대회 및 발표회 ○관현악단 및 국악연주단 운영학교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박람회 운영 ○각종 현장체험학습(도시체험활동 등) 운영 ○학생동아리 지원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지원	
				[02]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 등자녀교육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등 특별반 운영 지원 경비 ○북한이탈학생지원 관련 운영 경비	
			[18]수련및봉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등 제반 경비	
				[01]학생수련활동지원	○리더십배양과정 및 특성화수련프로그램 등 학생수련 활동 운영 경비 ○야영장, 수련장, 학생교육원 등의 학생교육 지원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 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02]학생봉사활동지원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민간단체 주관 봉사활동 경비 지원 ○청소년 선도, 학생봉사 자치활동 지도 등 청소년활동 관련 제반 경비	○
			[19]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등 제반 경비 ○학생흡연 예방 및 성교육 경비	
				[01]학생생활지도지원	○학생선도 등 학생생활 지도경비 ○흡연예방교실 운영 ○인성교육 및 실천사례발표대회 관련 제반 경비 ○생활지도 관련 각종 연수 및 협의회, 대회 운영 등 제반 경비 ○학교안전교육,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학생표창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 관련 제 경비	
				[02]양성평등및성교육	○양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제 경비	
				[03]학교폭력예방지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CCTV설치,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 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학교안전체험교실 운영 ○그린마일리지시스템 운영 지원비 ○밥상머리교육, 또래상담 등 프로그램운영비	○
			[20]대안교육운영지원		○대안교육 위탁 경비, 방송통신중·고 운영경비	
				[01]대안교육운영지원	○대안교육위탁교육비 지원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퇴청소년 복교지원 관련 제경비	
				[02]방송통신중·고운영	○방송통신중·고 운영 경비	
			[21]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등 제반 경비	
				[01]학생상담활동지원	○Wee센터 운영 ○Wee클래스 운영 ○학부모자원봉사자 운영 ○상담전문인력 운영 및 전문상담기관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	
			[22]진로진학교육		○학생진로교육 등 진학진로교육 제반 경비	
				[01]진로진학교육	○초중고학생 진로연계교육 관련 제 경비 ○진로지도 자료 개발, 연수 등 진로지도교육과정 운영 관련 제 경비 ○진로지역상담실 운영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	○
			[23]학력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등 학생 학력 평가 제반 경비	
				[01]학력평가관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 자체, 시·도 연합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 운영 경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 자체, 시·도 연합 주관 학력진단평가 운영 경비 ○기타 학력인증평가를 위한 경비	
			[24]학교평가관리		○학교 평가 등 제반 경비	
				[01]학교평가관리	○학교평가관리 제반 경비 ○학교평가결과 지원금 등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25]학생선발배정		○수학능력시험 및 입시관리 등 학생선발배정 경비	
				[01]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중학교무시험진학 관련 제반 경비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제반 경비 ○학생 전·편입학 및 재입학 관리 업무 경비	
				[02]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대학수능모의평가관리	
			[26]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교수학습센터 도움자료 발간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제반 경비	
				[01]교육연구운영지원	○교수연구지 및 학습우수사례 발간 ○교육연구지 발간, 교육정보화 학술지 발간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교사와 장학사 결연 활동	
				[02]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경비 ○교수학습지원센터 포털사이트 운영 ○영상자료제작 지원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27]검정고시관리		○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관리 제반 경비	
				[01]검정고시관리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경비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 검정고시 경비	
			[28]교과교실제운영지원		○교과교실제 시설비 및 운영비 등 제반 경비	
				[01]교과교실제운영지원	○교과교실제 시설비 ○교과교실제 운영비 등	
		[03]교육복지지원				
			[01]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등 학비지원 경비	
				[01]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저소득층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비 지원 ○특목고 및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 지원	
				[02]특성화고장학금지원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03]기타교육비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및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제외한 교육비 지원	
				[04] 교육급여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	
			[02]방과후 등 교육지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제반 경비	
				[01]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경비 ○방과후학교 대학생 귀향 멘토링 지원, 엄마품멘토링 운영,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운영 ○방과후돌봄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
				[02]주5일제수업지원	○주5일수업제운영 관련 제 경비	
				[03]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경비	
			[03]급식지원		○저소득층자녀중식비지원 등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급식지원 제반 경비	
				[01]학기중급식비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기중 중식지원비 ○특수학생 급식비 지원 등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 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02]토·공휴일중식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04]정보화지원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등 정보화지원 경비	
				[01]정보화지원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사이트 차단경비 포함) ○저소득층자녀 PC지원 ○저소득층자녀 IT교육 참가학생 경비 지원	
			[05]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농어촌 우수고 육성 등 교육여건 개선 제반 경비	
				[01]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지원	○농어촌우수고 육성 지원 사업 ○농어촌 전원학교(돌봄학교 포함) 및 작은학교 육성 사업 ○농어촌 적정규모 학교 육성 교육여건개선 경비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지원 ○소규모학교군 구성 운영 등	
				[02]기숙형학교지원	○기숙형학교 교육여건개선 경비 ○기숙형학교 기숙사 운영 경비	
			[06]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제반 경비	
				[01]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경비	○
			[07]누리과정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유아학비·보육비, 방과후과정반비 등)	
				[01]누리과정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경비(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반비 등) ○3~5세 누리과정 업무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	
			[08]교과서지원		○의무교육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교과용 도서 구입비	
				[01]교과서지원	○의무교육 대상자(초·중·특) 교과서 지급 경비 ○저소득층 고등학생 교과서 지원비 ○특수교육대상자(유치원, 고등학부 과정)에 교과서 보급을 위한 지원비 ○초등학교 영어 교과용 도서 구입 ○재량활동운영 교재 보급	
		[04]보건/급식/체육활동				
			[01]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 제반 경비 ○학교보건 연수 및 보건실 현대화 사업 지원 경비	
				[01]학교보건관리	○체질검사 및 각종 건강검진 경비 ○학생 성인병 정밀검사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학교보건교육자료 개발, 보건교사 연수 ○학교보건실 현대화 및 시설여건개선 관련 제 경비	
				[02]학교환경위생관리	○교육환경보호활동 지원 등 학교교육환경보호 관련 경비 ○학교환경위생 연수 ○먹는물 시설 개선 지원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미세먼지 관리	
			[02]급식관리		○급식시설 개선, 기구 구입 등 급식관리 제반 경비	
				[01]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위생 지원 경비 ○학교급식관련 자료 발간 ○학교급식관련 지도 및 점검 ○급식담당자 협의회 운영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 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02]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 운영차량 지원 및 관리비 ○급식종사자(비정규직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 인건비 및 출산휴가 대체 인건비 ○급식 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예산	
				[03]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	
			[03]각종체육대회활동		○소년체육대회 등 각종체육대회활동 제반 경비	
				[01]체육대회지원	○전국단위체육대회 및 시·도단위체육대회 지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 지원 ○교육장기 및 기타 각종 체육대회 운영 경비	
		[05]학교재정지원관리				
			[01]학교운영비지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등 제반 경비	
				[01]학교운영비지원	○공립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	
			[02]사학재정지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경비	
				[01]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학기관의 인건비 부족분 지원(맞춤형복지비 포함)	
				[02]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학기관의 운영비 부족분 지원	
		[06]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01]학생배치시설		○학교신설 등 학생배치시설 확충 경비	
				[01]학교신증설	○각급학교(유·초·중·고·특, 대안학교)의 신축, 이전신축 경비 ○학급증설학교(유·초·중·고·특, 대안학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02]학교일반시설		○학교 다목적 시설 등 일반시설 경비	
				[01]학교시설증개축	○다목적교실 증축 및 개축 ○특별교실 증축 및 개축 ○소규모 다목적실 증축 및 개축 ○기숙사(생활관) 증축 및 개축	
			[03]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01]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실대수선, 교사개축, 교직원편의시설확충, 급수시설개선, 냉난방시설개선, 승압시설개선, 외부환경개선, 정화조시설, 화장실개선,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내진보강, 그린스쿨, 장애인편의시설	○
	[053]평생·직업교육					
		[01]평생교육				
			[01]평생교육활성화지원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경비	
				[01]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공익법인 관리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	
				[02]평생학습운영지원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관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 ○교육아카데미 및 평생교육강좌 운영 ○평생학습도시 지원, 평생학습 축제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지원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 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및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02]독서문화진흥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 제반 경비	
				[01]도서관운영지원	○도서관 자료확충, 도서관 전산화 추진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지원팀 순회운영 ○도서관 세미나, 야간개관 연장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02]직업교육				
			[01]직업진로교육		○직업진로교육 지원 등 제반 경비	
				[01]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직업교육 연찬회 ○직업교육 체험연수 ○실업교육 박람회 ○직업교육관련 각종 자료 발간 ○일반계고직업교육과정 운영	○
	[054]교육일반					
		[01]교육행정일반				
			[01]교육정책기획관리		○주요업무계획추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 제반 경비	
				[01]교육정책기획관리	○주요업무 기획 및 보고 경비 ○공약사업관리, 교육감협의회 운영 ○각종 기획관련 자료 발간 ○교육정책 업무 추진 경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교육정책지원단 운영	
				[02]대외교육협력관리	○시·도청 및 유관기관의 교육협력을 위한 경비 ○교육자치 의회 협력 업무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등 제 경비	
			[02]교육정책홍보		○교육정책홍보물 발간 등 교육정책홍보 제반 경비	
				[01]교육정책홍보	○교육시책 홍보활동 경비 ○공보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교육관련 사진 촬영 및 관리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교육홍보영상제작 등 경비	
			[03]감사관리		○자체 감사활동지원 등 감사관리 제반 경비	
				[01]감사관리	○자체감사활동 및 산하기관 감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 ○국정감사 수감 관련 경비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경비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 ○반부패청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직자재산등록	
			[04]기관평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평가 등 평가 제반 경비	
				[01]기관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경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평가 경비 ○평가결과 지원금	
			[05]교육행정혁신		○혁신종합계획수립 등 교육행정혁신 제반 경비	
				[01]조직및성과관리	○본청 및 산하기관 조직관리,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 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직무성과계약제 관련 제 경비 ○목표관리제 운영, 분권이양업무 추진	
				[02]행정개선활동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행정권한위임, 교원업무경감, 제안제도 등 행정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학교발전기금 및 기부금품 지도·감독 경비 ○교육행정혁신 관련 경비, 학습동아리 운영 및 마일리제 운영	
			[06]법무관리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 제반 경비	
				[01]법무관리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 ○법제 심의 및 각종 위원회 운영 경비 ○각종 소송 및 심판업무 경비 ○각종 배상금, 승소포상금 및 사례금 ○고문 변호사 운영 ○교직원 법률상담 운영	
			[07]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 제반 경비	
				[01]의정활동지원	○의회 의정활동지원 관련 제반 경비	
			[08]선거관리		○교육감 선거관리 제반 경비	
				[01]선거관리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경비	
			[09]교육행정정보화		○정보시스템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 제반 경비	
				[01]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관리시스템, Edufine 등) 구축 및 관리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관리 ○전산실 운영 경비 ○행정(교육)전산망 구축 및 운영비 ○사회복무요원(전산보조) 운영, 전산보조원 운영 ○PC정비소 운영 경비	
				[02]정보보안관리	○보안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정보보호교육 및 운영관리 ○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리	
			[10]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교육통계연보발간 등 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제반 경비	
				[01]교육행정기록물관리	○행정자료실 운영 ○자료관 운영 ○기록물 관리 운영,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교육통계연보 발간 관련 제반 경비 ○교육행정자료 발간에 소요되는 제 경비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공시제 운영	
			[11]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민원실운영 등 민원행정서비스 제반 경비	
				[01]민원관리	○민원봉사실 운영 경비	
				[02]행정서비스관리	○행정서비스 업무 추진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제반경비 ○민원만족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포상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12]비상대비계획및보안		○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제반 경비	
				[01]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 직장민방위대 활동 및 운영 지원경비 ○ 을지연습 추진에 필요한 경비 ○ 사회복무요원 운영(전산보조, 특수보조 제외)	
			[13]예결산관리		○ 예산편성 등 예결산관리 제반 경비	
				[01]예산관리	○ 예산편성, 배정, 자료 조사, 예산서 인쇄 등 예산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 경비 ○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관련 경비 ○ 학교회계 업무 추진 관련 제반 경비	
				[02]결산관리	○ 결산관리에 소요되는 제 경비	
			[14]재무관리		○ 공유재산관리 등 재무관리 제반 경비	
				[01]재무회계관리	○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업무 지원, 계약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업무 추진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 각종 회계업무 추진 경비	
				[02]공유재산및물품관리	○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 재산 등기, 측량, 감정수수료 등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경비 ○ 재산취득·매각 관리, 각 부서 자산취득 경비 ○ 물품수급관리 등 제 경비	
			[15]학생배치계획		○ 학생배치계획 추진 관련 제반 경비(※ 시설비는 학생배치시설에 편성)	
				[01]학생배치계획관리	○ 학생배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통학구역 관리	
				[02]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 학교신설 및 이전업무 추진 ○ 학교 통·폐합 추진 경비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16]사학기관지도육성		○ 사립학교 경영평가 등 사학기관지도 육성 제반 경비	
				[01]사학기관관리	○ 학교법인 지도·감독 경비 ○ 사학직원 연수 경비 ○ 사학기관 행정지도 및 시설지원사업 지도 감독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17]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 학교운영위원회운영 등 학부모 및 주민참여확대 제반경비	
				[01]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관련 제반 경비 ○ 학부모 및 주민 참여 교육활동 경비 지원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및 제반 경비	○
			[18]시설사업관리		○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 등 시설사업관리 제반 경비	
				[01]시설사업관리	○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 시설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19]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 등 국제교육 문화교육협력 제반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01]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개발도상국 PC지원 및 초청 연수 등 ○국외단체와 자매결연 ○교육교류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20]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회계연도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01]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 사용 불가	
		[02]기관운영관리				
			[01]기본운영비		○본청, 교육지원청 및 사업소 기본운영비	
				[01]본청운영	○본청 운영 관련 경비	
				[02]교육지원청운영	○교육지원청 운영 관련 경비(※ 교육지원청 소속 직속기관 포함)	
				[03]직속기관운영	○직속기관 운영 관련 경비	
			[02]교육행정기관시설		○본청, 교육지원청 및 사업소 시설비 지원비	
				[01]본청시설관리	○본청시설 관련 경비	
				[02]교육지원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 및 소속 직속기관 시설 관련 경비	
				[03]직속기관시설관리	○직속기관 시설 관련 경비(※ 유아교육진흥원, 특수교육진흥원 설립 등 포함)	
		[03]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01]지방교육채상환		○지방교육채 상환 원금 및 이자 등 제반 경비	
				[01]지방교육채상환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 상환	
			[02]민간투자사업상환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민간투자사업 상환 제반 경비	
				[01]민간투자사업상환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03]일시차입금관리		○일시차입금 이자 등 일시차입금관리 제반 경비	
				[01]일시차입금관리	○일시차입금 이자	
		[04]예비비 및 기타				
			[01]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01]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02]제지출금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등	
				[03]내부유보금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별표 4]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5조제2항 관련)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100 인건비				
	110 인건비			
		110-01 보수	봉급	○ 봉급(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월액 포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봉급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포함
			성과상여금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6조의2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지급 하는 성과상여금
			대우공무원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 등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창안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교원보전수당	
			교원보전수당가산금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1)	
			교직수당가산금2)	
			교직수당가산금3)	
			교직수당가산금4)	
			교직수당가산금5)	
			교직수당가산금6)	
			교직수당가산금7)	
			교직수당가산금8)	
			교직수당가산금9)	
			선박및함정근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국제전문직위수당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 등으로지급하는 제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모범공무원수당	
			봉급조정수당	
			명예퇴직수당	
			장려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110-03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부임(일용 근로자)
		110-04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 인건비(상용 근로자)
		110-05 계약직교원 보수	계약직교원 인건비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인건비,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200 물건비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필기구, 용지구입, 토너구입 등 통상적인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사무용품비
			행사용품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단위의 워크숍 등 각종행사 용품 구입비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기타의 성격 포함
			상품구입비	○각종 상품구입비
			간행물구독료	○관보,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도서구입비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등은 430-01목에 계상
			공고및광고료	○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속기·원고료	○ 속기료, 원고료
			측량및감정수수료	○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토지 취득에 따른 측량 수수료는 410-01목에 계상)
			수임및자문료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수임료 및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 자문료
			기타용역비	○ 상기에서 나열하지 않은 번역료, 전사료, 검정료, 시험료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등기및소송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세 및 법정수수료) 단, 자산 취득에 따른 등기비는 해당과목에 계상
			업무대행수수료	○ 각종 업무대행 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 전자금융 수수료
			각종수수료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각종 수수료
			보관운송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외자조작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경비는 210-02목에 계상)
			교육경비	○ 공무원의 교육경비 및 교육등록비
			약품구입비	○ 의무실, 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소모성 약품
			소모성의료기구	○ 자체 의료시설의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범용 S/W 구입비	○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단,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무형자산성 프로그램의 소유권 취득은 440-01 목에 계상)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 전화요금(전보료 포함)
			인터넷통신요금	○ 인터넷통신요금
			철도화물운송요금	○ 철도화물운송요금
			전기요금	○ 전기요금
			방송수신료	○ 위성방송, 유선방송수신료
			상하수도료	○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 도시가스료
			오물수거료	○ 오물수거료
			기타 공공요금	○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공공요금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단기공탁금및체당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1년 미만 공탁금과 체당금
			장기공탁금및체당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1년 이상 공탁금과 체당금
			각종부담금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 및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보험료(자동차, 회계보증,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등)
			자동차세	○ 자동차세
			설비투자상환금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ESCO)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부가가치세	○ 건물임대 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
			기타 제세	○ 상기 항목 나열되지 않은 기타 제세
		210-03피복비	피복 구입비	○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피복대여비	○ 피복대여비
			침구 구입	○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등 경비
		210-04 급량비	주·부식대	○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합숙숙박비	○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 이외의 숙박비를 포함
			주·부식물 생산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기타 급량비	○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210-05특근매식비	기본특근매식비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매식비 -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을지연습특근매식비	○ 교육청 등 기관의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특근자 매식비
			기타특근매식비	○ 기타특근매식비
		210-06 운영수당	위원회참석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 수당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위원회참석 실비경비	○ 위원회참석 시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지급 경비
			일·숙직비	○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 시험관리비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지급제외 - 출제 및 심사수당 등
			강사수당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 외래강사료(자체교육 포함) 단, 민간인인 경우 310-01목으로 계상 - 교직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신분의 외래강사 수당
			강사실비경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 외래강사(자체교육포함)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실비지급 경비. 단, 민간인인 경우 310-01목으로 계상 - 교직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신분의 외래강사 수당
			기타운영수당	○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운영수당
		210-07 임차료	토지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임차료
			시설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임차료(일시 임차료 포함) ○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기계장치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집기비품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무기기, 집기 비품 임차료
			교구·기자재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교구・기자재 임차료
			통학차량 외 임차료	○ 행정기관 차량임차 포함
			통학차량임차료	○ 통학차량임차료
			자산운용리스료	○ 자산 운용 리스료
			기타 자산 임차료	○ 기타 자산 임차료
		210-08 연료비	냉난방기 연료비	○ 냉난방용 LPG 및 유류(단,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연료비는 210-02 목에 계상)
		210-09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물 소규모수선비	○ 시설장비유지비 1. 기계기구,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2.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등 3.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 제비용 포함)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단,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420-03목에 계상
			기계장치소규모수선비	○기계장치 소규모수선비
			집기비품소규모수선비	○집기비품 소규모수선비
			교구·기자재소규모수선비	○교구·기자재 소규모수선비
			박물관유물소규모수선비	○박물관 유물(유산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
			기타자산소규모수선비	○기타 자산 소규모수선비
		210-10 차량선박비	차량유류대	○운반 건설 기계 포함
			선박유류대	○선박 유류대
			차량 소규모수선비	○운반 건설 기계 포함. 단,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0목에 계상
			선박 소규모수선비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0목에 계상
			차량선박소모품비	○차량, 선박(선구비), 항공기에 대한 소모품비
		210-11 재료비	사업용(학교기업)재료비	○사업용(학교기업)으로 구매하는 각종 재료비 - 재료,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단, 재물조사대상 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430-01목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210-09목에 계상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 구입비
			시험연구용 재료비	○시험연구용으로 구매하는 각종 재료비 - 시험연구용 재료, 시약, 시료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210-09목에 계상 -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 구입비
			실험실습용 재료비	○실험실습용으로 구매하는 각종 재료비 - 실험실습재료, 시약, 시료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소모성 물품은 제외)은 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210-09목에 계상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 구입비
			기타재료비	○상기 이외의 기타 재료비
		210-12 교육운영비	교과서구입비	○교과서지원에 따른 학생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구입비
			기타교육운영비	○학교 및 산하기관의 교재교구 수선 비용 등
		210-13 위탁사업비	시설물 위탁용역비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자치단체 업무의 외부위탁에 따른 제비용
			기계장치 위탁용역비	○기계장치 위탁용역비(무인기계경비 등 별도 구분한 위탁용역비는 제외)
			입목죽 위탁용역비	○입목죽 위탁용역비
			집기비품위탁용역비	○집기비품위탁용역비
			교구·기자재위탁용역비	○교구・기자재위탁용역비
			선박 위탁용역비	○선박관리 위탁용역비
			차량 위탁용역비	○운반 건설기계 포함한 차량관리 위탁용역비
			유산자산위탁용역비	○유산자산 위탁용역비
			소프트웨어위탁용역비	○소프트웨어 위탁용역비
			기타자산위탁용역비	○기타자산 위탁용역비
			교육청업무 외부위탁비용	○교육청업무 외부위탁비용
		210-14 민자사업운영비	BTL운영비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BTL운영비는 620-05목에 계상
		210-15 기타일반수용비	기타일반수용비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일반수용비
	220 여비			
		220-01 국내여비	공무원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및 조례에 의한 공무원 출장여비
			비공무원 출장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의 출장여비
			이전여비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220-02 국외여비	국외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자의 해외 출장여비
		220-03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 부대 경비는 업무추진비에 계상
		220-04	국외훈련여비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국외훈련여비		- 항공료, 체제비, 학자금 등
		220-05 국내훈련여비	국내훈련여비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위탁교육 등) 국내훈련여비
	230 업무추진비			
		23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경비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정원가산금	○정원가산금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부서운영경비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30-02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사업추진경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경비 - 해외출장 지원경비, 대회출전각종 격려금 등 ○피해학생 학부모 격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외빈초청경비	○외빈초청여비 중 연회비/선물비/행사경비
			기타 업무추진비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업무추진비
	240 복리후생비			
		240-01 교직원복리후생비	교원학술연구지원비	○교원 학술·연구모임 지원경비
			동호회지원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경비
			직원능력개발비	○교직원 능력 개발비
			영유아보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 교사 수당
			기타복리후생비	○교직원 기타 복리후생비
		240-02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교직원 맞춤형복지비(학교로 전출할 경우 620-07)
			사립맞춤형복지비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비정규직 포함) 맞춤형복지비(학교로 전출할 경우 620-14)
			비정규직맞춤형복지비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맞춤형복지비(학교로 전출할 경우 620-07)
		240-03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담임수당지원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담임수당
			교직수당지원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교직수당
			기타수당지원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기타수당
		240-04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250 직무수행경비			
		250-01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 직급보조비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250-02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50-03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	○ [별표 1] 5. 특정업무경비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50-04 기타직무수행경비	감사활동비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경비 ○ 출장시 마다 1일 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관재활동비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 규칙 및 지침 등으로 정한 관재활동비 ○ [별표 1] 5. 특정업무경비의 회계담당공무원의 월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260 연구개발비			
		260-01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교육청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경비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
			연구관리비	○ 연구관리비
			소프트웨어개발비	○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감리비 포함)
	280경상교육지원사업비			
		280-01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각급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620-06 및 620-13목에 계상)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310-01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잡비 등
			장학금및학자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민간인포상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하는 장려금, 상금 및 보상금
			민간인부상치료비	○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 치료비
			민간행사급량비	○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급식하는 급량비(매식비 단가 적용) 및 교통비(실비)
			민간행사교통비	○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교통 실비 ○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지급하는 대규모 행사의 단체적 일괄적 실비 보상적 경비로 단순출장, 출전과 구분
			민간행사숙박비	○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지급하는 대규모 행사의 단체적 일괄적 실비 보상적 경비로 단순출장, 출전과 구분
			민간행사사례금	○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는 지급 제외)
			민간외래강사료	○ 민간외래 강사료
			민간외래강사실비경비	○ 민간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사회복무요원 보수	○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310-02 배상금	배상금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보전금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
			변상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10-03 포상금등	공무원포상금및상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금
			해외파견공무원장학금	○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 파견 공무원의학자금 등 업무관련 해외기관 위탁에 따른 제비용
			예산성과금	○ 예산 성과금
			공로연수비	○ 공로연수비 가.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해외연수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의 배우자에 대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경비
			기타포상금	○ 기타 포상금 - 교육행정기관 주관 각종 교육 및 교육행정 성과의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제고를 위한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직원의 사기진작 등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의 경우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기관포상의 경우 포상계획 수립 시 포상금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설정하여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집행을 지양)
	320 민간이전			
		320-01 민간보조	민간보조비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620목에 편성)
			기타민간보조	○ 문화재발굴 비용 등 기타 민간보조
		320-02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 1. 교육청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 전액 회수하는 제 사업비 2. 교육청의 위임 또는 위탁 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320-03 공무원법정부담금	공무원연금부담금	○ 공무원 부담금(연금 등)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3.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공무원재해보상부담금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05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 1. 일용인부의 국민연금(퇴직금),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2. 일용인부의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령에 의한 기타 경비 3. 기간제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기간제근로자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기간제근로자퇴직급여	
			기간제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06 보험료부담금	보험료부담금	○ 민간이 부담하는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보험료 지원비)
			학교안전공제회비	○ 학교안전공제회비
		320-07	이차보전금	○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이차보전금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 (환차손 포함)
			기타보전금	○기타 보전금
		320-08 민간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320-09 기타민간융자금	단기민간융자금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부문에 대하여 유상으로 1년 미만으로 빌려주는 자금
			장기민간융자금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부문에 대하여 유상으로 1년 이상 빌려주는 자금
			학자대여금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
			단기임차 보증금	○1년 미만에 회수할 임차 보증금
			장기임차 보증금	○1년 이후에 회수할 임차 보증금
		320-10 연금부담금	사망조의금	○교직원 본인 및 가족 사망조의금
			재해보상금	○교직원 재해보상금
		320-11 학생및학생단체 이전경비	청소년단체활동보조금	○아람단, 누리단 등 청소년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금
			학생치료비	○학생치료비
		320-12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 1. 국민연금(퇴직금)과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2. 건강보험부담금 3. 고용보험료 4. 산업재해보험료 5. 기타직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건강보험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무기계약근로자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13 계약직교원 법정부담금	계약직교원 국민연금부담금	○계약직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운동부지도자 등) 대한 법정부담금 1. 국민연금(퇴직금)과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2. 건강보험부담금 3. 고용보험료
			계약직교원 건강보험부담금	
			계약직교원 산업재해보험료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계약직교원 고용보험 부담금	4. 산업재해보험료 5. 기타직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계약직교원 퇴직급여	
			계약직교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부담금	
	330 자치단체이전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 중 자본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금
		330-03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시설물의 건설 및 대규모 수선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330-04 자치단체 보육료보조	3세보육료보조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세 어린이집 원아에게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육료 보조경비
			4세보육료보조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4세 어린이집 원아에게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육료 보조경비
			5세보육료보조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5세 어린이집 원아에게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육료 보조경비
	340 해외이전			
		340-01 해외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경비
		340-02 국제부담금	국제부담금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350 출연금			
		350-01 출연금	출연금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교육청의 출연금
			기타출연금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기타 출연금
400 자산취득				
	410 토지매입비			
		410-01	토지매입비	○학교,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토지매입비	토지보상비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실업비 등)에 대한 보상비
			토지매입수수료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타토지비용	○토지 취득 후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등(정지비 제외)
	420 건설비			
		420-01 기본조사설계비	사전조사비용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기본설계비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420-02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가.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 완료 후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설계에 착수 나.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안됨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야함
		420-03 시설비	건물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물 시설비 (대규모수선 유지비 포함)
			토목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토목 시설비
			전기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전기 시설비
			정보·통신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정보·통신 시설비
			소방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방 시설비
			기계설비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설비 시설비
			위생설비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위생설비 시설비
			구축물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구축물 시설비
			조경공사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조경공사 시설비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선박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선박 시설비
			항공기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공기 시설비
			도장공사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장공사 시설비
			부지정지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부지정지 시설비
			자산철거비	○노후건물 철거 등 자산 철거비
			기타자산 시설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자산 시설비
		420-04 감리비	감리비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 기존자산의 가치 증대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420-05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용 1. 시설, 대수선,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가.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나.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다.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라.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 마.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바.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사. 공사과정 발생한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 자산 증가를 조성하는 물품 구입 및 시설은 해당 비목에 편성
	430 유형자산			
		430-01 취득비	건물취득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물 취득비
			구축물취득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구축물 취득비
			기계장치취득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장치 취득비
			입목죽취득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입목죽 취득비
			선박취득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선박 취득비
			항공기취득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공기 취득비
			운반건설기계및차량취득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취득비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전기통신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전기통신기기 취득비
			사무용기기 및 집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복사기 등 행정사무기기 및 집기 취득비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취득비
			산업기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산업기계 취득비
			의료및화학분석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취득비
			물리시험측정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리시험측정기기 취득비
			기타실험장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실험장비 취득비
			기타잡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잡기기 취득비
			교구용운반건설기계및차량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취득비
			교구용전기통신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 전기통신기기 취득비
			교구용기기 및 집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 기기 및 집기 취득비
			교구용 기계요소, 공작기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 기계요소, 공작기계 취득비
			교구용 산업기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 산업기계 취득비
			교구용 의료및화학분석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 의료및화학분석기기 취득비
			교구용물리시험측정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 물리시험측정기기 취득비
			교구용기타실험장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 기타실험장비 취득비
			교구용 기타잡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 기타잡기기 취득비
			도서취득비	○ 학교도서관 및 도서실, 기록관 등의 자본 형성적 도서 구입비
			문화유산자산 취득비	○ 박물관유물 유상 취득비
			예술품취득비	○ 박물관 유물이 아닌 예술품 취득비
			기타유형자산취득비	○ 위 항목에 나열되지 않은 자산 취득비
	440 무형자산			
		440-01 무형자산	특허권	○ 무형자산 취득비 1.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2. 법률상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등의 무체재산권 -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법률상의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 영업권
			저작권	○ 저작권 취득비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컨텐츠 취득비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 취득비
			의장(디자인)권	○ 의장(디자인)권 취득비
			상표권	○ 상표권 취득비
			상호권	○ 상호권 취득비
			기타무형자산취득비	○ 기타무형자산 취득비
	460 기금적립			
		460-01 감채기금	감채기금	○ 감채기금으로 적립
		460-02 기타기금	기타기금	○ 기타기금으로 적립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자본형성적 사업지원비 (각급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620-06 및 620-13목에 계상)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510-01 차입금상환	유동성장기지방교육채	○ 유동성장기지방교육채 증권의 상환 * 유동성장기지방교육채는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금이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지방교육채를 말함
			장기지방교육채	○ 장기지방교육채 증권의 상환 * 장기지방교육채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지방교육채증권발행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말함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은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금이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금융기관차입금을 말함
			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장기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유동성대체하지 아니한 장기금융기관 차입금의 조기상환) * 장기금융차입금이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규정에 의한 차입금(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을 말함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의 상환 *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은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금이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말함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의 상환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말함
			금융리스 채무	○ 금융리스 채무 차입금 상환
		510-02 차입금이자	유동성장기지방교육채증권 이자비용	○ 장기지방교육채 중 차년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교육채 증권의 이자비용
			장기지방교육채증권이자비용	○ 지방교육채 증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이자비용	○ 유동성 장기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
			장기금융기관차입금이자비용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비용	○ 유동성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비용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자비용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비용
			금융리스채무이자비용	○ 금융리스채무 이자비용
			일시차입금이자비용	○ 지방회계법 제24조에 의거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510-03 민자사업 지급금	BTL 원금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보상
			BTL 이자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
600 전출금 등				
	610 전출금 등			
		610-01 일반회계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 일반자치단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자금
		610-02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 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금
	620 학교회계전출금			
		620-01 인건비지원	기타직인건비지원	○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교원 대체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학교회계직원 등 인건비
		620-02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 각급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 한국교육개발원 운영비 부담금(방송통신중 및 방송통신고)
		620-0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교원 대체 기간제교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사 및 시간강사 인건비 제외]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중 각급 학교에서 직접집행 가능한 경비
		620-05 BTL운영비	BTL운영비	○시설 사업비 중 BTL 운영 관련 지원비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학교특별교육지원비	○공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620-07 공립맞춤형복지비	공립맞춤형복지비	○공립교직원 맞춤형복지비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교원명예퇴직수당 포함)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620-10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620-11 사립학교 시설지원	사립학교 시설지원	○시설사업비, 기자재구입비 등 기타사업에 소요되는 자본 형성적 경비 계상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620-12 사립학교 BTL운영비	사립학교 BTL운영비	○시설 사업비 중 BTL 운영 관련 지원비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특별교육비 지원	○사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620-14 사립맞춤형복지비	사립맞춤형복지비	○사립교직원 맞춤형복지비
		620-15 사립유치원 학비지원	3세학비지원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세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지원하는 학비
			4세학비지원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4세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지원하는 학비
			5세학비지원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5세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지원하는 학비
		620-16 사립학교 기타직인건비지원	사립학교 기타직인건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사립학교 학교회계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지원 경비
700 예비비 및 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710-01 예비비	일반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예비비(예측할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예비비 (예비비 편성한도는 없음)
		710-02	국고보조금반환	○교육청이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반환금 및 기타		○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 미정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기타 반환금	○ 기타 반환금
		710-03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	○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별표 5]

세입 · 세출예산의 편제(제5조 관련)

1. 예산서 편제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Ⅰ. 예산총칙

Ⅱ. 세입·세출예산

1.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가.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나.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다.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라.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2.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사업설명서)

3.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Ⅲ. 계속비사업 조서

Ⅳ. 채무부담행위 조서

Ⅴ. 명시이월사업 조서

제2권. 첨부서류

1.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3.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명시이월 명세서

6.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7. 지방교육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8.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9. 공유재산 관련서류
10.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11.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2.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13. 성인지 예산서
14. 성과계획서
15.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16.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17.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2.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예산의 절사와 절상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예산의 단위
- 세입·세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천원』으로 함

○ 계량단위
- 모든 계량단위는『미터법』에 의함

3. 예산서 서식

1-1. 표지 및 예산총칙

1-2.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1-3.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1-4.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1-5.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1-6.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사업설명서)

1-7.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1-8. 계속비사업 조서

1-9. 채무부담행위 조서

1-10. 명시이월사업 조서

1-11. 지방교육채 조서

1-12.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1-13.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1-14. 성인지 예산서

(서식 1-1)

○○년도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시·(도)교육청

예 산 총 칙 (예시)

제1조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천원으로 한다.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2조 ○○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3조 ○○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년도 지방교육채발행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6조 ○○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목의 예산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 상호간의 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2. 계약직공무원, 기타직 직원 급여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신설비

제9조 ①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서식 1-2)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회계연도 :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		%
	기타이전수입		%		%		%
	소계		%		%		%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		%		%
	행정활동수입		%		%		%
	자산수입		%		%		%
	이자수입		%		%		%
	적립금수입		%		%		%
	금융자산 회수		%		%		%
	기타수입		%		%		%
	소계		%		%		%
차 입	지방교육채		%		%		%
	소계		%		%		%
기 타	전년도이월금		%		%		%
	소계		%		%		%

(서식 1-3)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회계연도 :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다. 교육복지지원		%		%		%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		%
2. 평생・직업교육		%		%		%
가. 평생교육		%		%		%
나. 직업교육		%		%		%
3. 교육일반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나. 기관운영관리		%		%		%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		%		%
라. 예비비및기타		%		%		%

(서식 1-4)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회계연도 :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기관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본 청			%		%		%
	공보담당관실		%		%		%
	○○담당관실		%		%		%
	○○국 ○○과		%		%		%
	○○국 ○○과		%		%		%
	○○국 ○○과		%		%		%
직속기관			%		%		%
	○○○연수원		%		%		%
	○○○도서관		%		%		%
교육지원청			%		%		%
	○○교육지원청		%		%		%
	○○교육지원청		%		%		%

(서식 1-5)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회계연도 :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100 인건비		%		%		%
110 인건비		%		%		%
200 물건비		%		%		%
210 운영비		%		%		%
220 여비		%		%		%
230 업무추진비		%		%		%
240 복리후생비		%		%		%
250 직무수행경비		%		%		%
260 연구개발비		%		%		%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		%
300 이전지출		%		%		%
310 보전금		%		%		%
320 민간이전		%		%		%
330 자치단체이전		%		%		%
340 해외이전		%		%		%
350 출연금		%		%		%
400 자산취득		%		%		%
410 토지매입비		%		%		%
420 건설비		%		%		%
430 유형자산		%		%		%
440 무형자산		%		%		%
460 기금적립		%		%		%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		%
500 상환지출		%		%		%
510 상환지출		%		%		%
600 전출금 등		%		%		%
610 전출금 등		%		%		%
620 학교회계전출금		%		%		%
700 예비비 및 기타		%		%		%
710 예비비 및 기타		%		%		%

(서식 1-6)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사업명세서)

장	이전수입

10000

(예산구분) ○○년 본예산

□ 사업개요

1. 근거
2. 개요
3. 세입내용
4. 세입예산액

□ 예산액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관	항	목	①	②	③=①-②	③/②
합계						%
중앙정부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
		지방교육세전입금				%
		담배소비세전입금				%
		시도세전입금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
	비법정이전수입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국고지원전입금				%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
기타이전수입						%
	민간이전수입					%
		기부금				%
		기타지원금				%
	자치단체간이전수입					%
		전입금				%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11000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이전수입

□ 사업개요

1. 근거
2. 개요
3. 세입내용
4. 세입예산액

□ 예산액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항	목				
합 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100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이전수입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 사업개요

1. 근거
2. 개요
3. 세입내용
4. 세입예산액

□ 예산액

(단위 : 천원)

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목	보통교부금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 이전수입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 보통교부금	(소관)

□ 사업개요

1. 근거
2. 개요
3. 세입내용
4. 세입예산액

□ 예산액

(단위 : 천원)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

(장)이전수입 (관)중앙정부이전수입 (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보통교부금 (단위: 천원)

사업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금액		

※ 장·관·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서식 1-7)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정책사업	인적자원개발

051 - 01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분야) 교육	(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정규직인건비				%
비정규직인건비				%
교원역량강화				%
지방공무원역량강화				%
교원인사관리				%
지방공무원인사관리				%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
교직원단체관리				%

□ 경비성질별 내역

(단위 : 천원)

성질별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상환지출				%
전출금 등				%

단위사업	정규직인건비

01 - 01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인적자원개발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소관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교원인건비	계				%
	○○과				%
지방공무원인건비	계				%
	○○과				%
전문직인건비	계				%
	○○과				%

세부사업	교육공무원인건비

01 - 01 - 01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기능) 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 ○○과
(정책사업) 인적자원개발	(단위사업) 정규직인건비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

재원내역					
일반재원	국고보조금				

(정책)인적자원개발 (단위)정규직인건비 (세부)교육공무원인건비 (단위 : 천원)

사업내역	목	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금액		

(서식 1-8) 계속비사업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단위 : 천원)

과목			사업명	사업비 총 액	전전년도 이전			전 년 도			계 획 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당해 년도	○○ 년도	○○ 년도	

(서식 1-9) 채무부담행위 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채무부담 행 위 액	상 환 계 획				사 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년	○○년	○○년	○○년	

(서식 1-10) 명시이월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명시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서식 1-11) 지방교육채 조서

지방교육채 조서

(단위 : 천원)

구분	기 간		이율	기채선	기채액 (A)	기상환액 (B)	전 년 도 상 환						당해연도상환 계 획 액			금후 상환 계획액 (E)	기채 사유
							상환계획			상 환 액							
	기채 년도	상환 완료 예정 년도					원금	이자	계	원금 (C)	이자	계	원금 (D)	이자	계		

○ 구분 : 금융기관채, 지방교육채증권, 기타 차입금, 국외차입금 등

○ 기채액(A)=기상환액(B)+전년도 상환액(C)+당해연도 상환계획액(D)+금후 상환계획액(E)

(서식 1-12)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총사업비	상환기간		기상환액	상환 예정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시작	완료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이후

○ 총사업비 : BTL 임대료를 말하며, 운영비는 제외

○ Y년 : 당해연도

(서식 1-13)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1. 지방교육재정 현황

o 당해연도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표시

2. 교육부령이 정하는 재정지표

가.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Y년	Y-1년	증감
재정자주도((B+C+D)/A×100)			
세입예산총액(A)			
지방교육재정교부금(B)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C)			
자체수입(D)			

【작성기준】

o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o 세입예산총액 : 본예산액 기준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세입 목 보통교부금(11101), 특별교부금(11102)

o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 세입 목 지방교육세전입금(12101), 담배소비세전입금(12102), 시도세전입금(1210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12104)

o 자체수입 : 세입 장 자체수입(20000) (단, 관 적립금수입(25000), 금융자산회수(26000)는 제외), 관 기타이전수입(16000)

나.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Y년(A)	비율	Y-1년(B)	비율	증감 (C=A-B)	비율(C/B)
세출예산총액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작성기준】

o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o 세출예산총액 : 본예산액 기준

o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경비 + 기본경비

① 교육기관

– 인력운영경비

· 교원인건비 및 계약제교원인건비 세부사업 내 인건비(110), 직급보조비(25001),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32005), 무기계약근로자법정부담금(32012),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32013), 인건비지원(62001)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 내 인건비재정결함보조(62008), 사립학교기타직 인건비지원(62016)

· 모든 단위사업의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24003), 교원연구비(240-04)

– 기본경비

· 교원인건비 및 계약제교원인건비 세부사업 내 맞춤형복지비(24002), 공립맞춤형 복지비(62007),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 학교운영비지원 세부사업의 학교운영비(62002)

·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의 운영비재정결함보조(62009)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의 맞춤형복지비(24002),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② 행정기관

– 인력운영경비

·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2013년은 전문직인건비), 계약제직원인건비 세부사업 내 인건비(110), 직급보조비(25001), 특정업무경비(25003),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32005), 무기계약근로자법정부담금(32012),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32013), 인건비지원(62001)

– 기본경비

·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2013년은 전문직인건비), 계약제직원인건비 세부사업 내 맞춤형복지비(24002), 공립맞춤형복지비(62007),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 기본운영비 단위사업

3. 부채

가. 부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Y-2년 (가)	비율 (B/A)	Y-3년 (나)	비율 (B/A)	증감 (다=가-나)	비율 (다/나)
세입결산 총액(A)						
부채 계(B=C+D)						
통합부채(C)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우발부채(D)						
지급보증						
채무부담행위						
계약상 약정						
소송사건						

【작성기준】

o Y-2년은 전전년도, Y-3년은 Y-2년의 직전연도 결산기준

o 유동부채 :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의 유동부채(세외예수금)

o 장기차입부채 :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교육채, 민자리스부채, 금융지스부채

o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한 부채로서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비용, 장기선수수익, 장기선수금, 장기세외예수금(임대보증금)

o 우발부채 :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될 손실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부채로 진행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재정상태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반영

나. 통합부채의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내 역	금 액	비고
통합부채 계(D=A+B+C)			
유동부채(A)			
장기차입부채(B)			
기타비유동부채(C)			

【작성기준】

o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o 과목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계정과목 3레벨 수준(예 : 미지급금, 선수금)

다. 우발부채의 내역

다-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 백만원)

연번	발생연도	행위명(행위내용)	제공받은자	보증채무액	부채계상액	채권자
계						

【작성기준】

o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다-2. 채무부담행위

(단위 : 백만원)

연번	발생연도	행위명(행위내용)	제공받은자	채무부담 행위금액	부채계상액
계					

【작성기준】

o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다-3.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 백만원)

연번	발생연도	행위명(약정내용)	계약상대자	약정금액	부채계상액
계					

【작성기준】

o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o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등의 약정내용이 있는 경우에 반영

다-4. 소송사건

(단위 : 백만원)

유형	건수	소송가액	소송충당 부채계상금액	비 고
계				

【작성기준】

o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o 유형 : 처분취소, 손해배상, 지위확인, 반환청구, 대금청구, 소유권이전등기, 기타소송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가.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Y년(A)	비중	Y-1년(B)	비중	증감 (C=A-B)	비율(C/B)
세출총액						
의무지출						
재량지출						

【작성기준】

o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본예산액 기준

o 의무지출 :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방교육채 및 차임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

o 재량지출 : 의무지출 외의 지출

나. 의무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역	금 액	관련 근거	비 고
합 계			
△△△사업			
○○○사업			
…			

【작성기준】

o 당해연도 본예산액 기준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목(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작성기준】

o 전년도 10.1부터 당해연도 9.30까지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o 감사기관은 감사원, 교육부 등 중앙부처

o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교부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 지출	재해대책비 목적외 사용	*△1,000*
증액	재정운영 성과평가 우수	○○년 재정운영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10,000*

【작성기준】

o 전년도 10.1부터 당해연도 9.30까지 확정된 교부금 대상

o 감액 :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거나 의무지출을 게을리 한 경우 등 보통교부금 산정 교부시 감액된 내용으로 작성(보통교부금 확정교부자료 참고)

o 증액 : 교육부의 재정운영 성과평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된 경우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매년 10월경(예산안 제출 전) 공문으로 통보하는 결과 서식 첨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가-1. 지방채 발행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지방채		특별 교부금	국고 보조금	지방 보조금	자체 재원	
		교부금 부담	자체 부담					

【작성기준】

o 작성일 현재기준, 원금만 작성

o 교부금부담 :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o 자체부담 : 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지방채

o 총사업비 = 지방채+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의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재원에 지금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자체재원

o 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예정액을 필히 기재

가-2.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o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학교신설사업 : 학교별(○○초)로 작성
- 환경개선사업 : 단위사업별(예 : ○○초 외 10개교 창호교체사업)로 작성

※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개요

○ 기 간 :

○ 위 치 :

○ 규 모 :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 행 액		향후 소요액	
			Y-2년도까지	Y-1년도	Y년도	Y+1년도 이후
계						
지방채	교부금부담					
	자체부담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

□ 향후계획

○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나. 민간투자사업 현황

나-1. 민간투자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사업명	민 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전년도까지 (Y-1까지)	당해연도 (Y)	향후예정액 (Y+1이후)	

【작성기준】

o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BTL) 심의 시 총사업비

o 재정부담액 : 전년도까지는 BTL임대료 등의 집행액, 당해연도 이후는 추정액

나-2.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o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작성서식 예시)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개요

○ 기간 : ○ 위치 : ○ 민간사업자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Y-2년까지	Y-1년도	Y년도	Y+1년도 이후
계					
지 방 채					
자체재원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 추진단계(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중 택1)

○

○

□ 향후계획

○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u>수요예측, 계약조건</u>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서식 1-14) 성인지 예산서

가. 표지

○○년도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 ○ ○ 시·(도)교육청

나.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서 개요 >

1. 성인지 예산의 의의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년 성인지 예산은 각 기관별로 작성한 성인지 예산을 취합·보완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임

2. '○○년 성인지 예산 개요

□ '○○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개 기관의 ○○개 사업*이며,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는 ○○○천원 수준임

*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	비 고
필수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최근 3년간 시행한 사업
	○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매년「예산편성 편람(교육부 지침)」에 포함 통보
선택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교육감 공약사업 등

□ '○○년 성인지 예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시·교육청별 특성에 맞게 수록)

○ '○○년 성별영향평가 중점과제인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업을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 '○○년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총 3개 과제 중 1개 과제를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기반 마련

○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둠

3.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첨부서류)

다. 성인지 예산 총괄표

Ⅰ. 성 평등 목표

○
-

Ⅱ. ○○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
-

Ⅲ.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분야별 규모

□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사 업 분 류	사업개수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개				%
1. 여성정책 추진사업	개				%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개				%
3. 교육부지정사업	개				%
4. 자체사업*	개				%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		%
1-1.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		%		%
…						%		%		%
2.일·가정 양립 확산						%		%		%
2-1.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		%
…						%		%		%
3.고용에서의 성격차 해소						%		%		%
3-1.다양한 분야의 양성평등한 진출 및 일자리 확대						%		%		%
…						%		%		%
4.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		%
4-1.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		%		%
…						%		%		%
5.폭력근절 및 인권 보호						%		%		%
5-1.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		%		%
…						%		%		%
6.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						%		%		%
6-1.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		%		%
…						%		%		%
7.양성 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						%		%		%
7-1.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		%		%
…						%		%		%

※ 사업분류 : "1" 여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사업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다. 교육복지지원						%		%		%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		%
2. 평생·직업교육						%		%		%
가. 평생교육						%		%		%
나. 직업교육						%		%		%
3. 교육일반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나. 기관운영관리						%		%		%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		%		%
라. 예비비및기타						%		%		%

※ 사업분류 : "1" 여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사업

□ 기관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기 관 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본 청						%		%		%
						%		%		%
						%		%		%
						%		%		%
						%		%		%
직 속 기 관						%		%		%
						%		%		%
						%		%		%
						%		%		%
교육지원청						%		%		%
						%		%		%
						%		%		%

※ 사업분류 : "1" 여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사업

라. 정책과제별 성인지 사업 예산 현황

【정책분야 : 】

정책과제명	

□ ○○년도 성 평등 목표

○
○

□ 대상사업의 세부사업별 현황

(단위 : 천원)

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	사업명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부문					%
정책사업1					%
단위사업1					%
세부사업1					%
	사업1				%
	사업2				%
세부사업2					%
	사업1				%
					%
					%

□ 기관별 성별수혜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본 청				%
				%
				%
				%
				%
직 속 기 관				%
				%
				%
교육지원청				%
				%
				%

마. 기관별 성인지 예산서

기 관 명(○ ○실 · 과)

Ⅰ. ○○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

-

Ⅱ. 성인지 예산의 규모

□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사 업 분 류	사업개수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개				%
1. 여성정책 추진사업	개				%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개				%
3. 교육부지정사업	개				%
4. 자체사업*	개				%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계						%		%		%
1.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		%
1-1.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		%		%
…						%		%		%
2.일·가정 양립 확산						%		%		%
2-1.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		%
…						%		%		%
3.고용에서의 성격차 해소						%		%		%
3-1.다양한 분야의 양성평등한 진출 및 일자리 확대						%		%		%
…						%		%		%
4.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		%
4-1.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		%		%
…						%		%		%
5.폭력근절 및 인권 보호						%		%		%
5-1.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		%		%
…						%		%		%
6.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						%		%		%
6-1.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		%		%
…						%		%		%
7.양성 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						%		%		%
7-1.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		%		%
…						%		%		%

※ 사업분류 : "1" 여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사업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다. 교육복지지원						%		%		%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		%
2. 평생·직업교육						%		%		%
가. 평생교육						%		%		%
나. 직업교육						%		%		%
3. 교육일반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나. 기관운영관리						%		%		%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		%		%
라. 예비비및기타						%		%		%

※ 사업분류 : "1" 여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사업

바. 사업별 설명자료(예산부서 총괄)

[세부사업명 :]

사 업 명	○ ○ ○ ○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예산구조	(분 야)	(부 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성인지 항목	(정책분야)	(정책과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자체 추진사업

※ 해당되는 칸에 "○"표시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금 액(A-B)	증감률
계				%
일 반 재 원				%
국 고 보 조 금				%
특 별 교 부 금				%
자 치 단 체 보 조 금				%
지 원 금				%
기 타				%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 분			Y-3년도	Y-2년도	Y-1년도
합계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과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			명	명	명

※ 통계출처 : 교육통계연보 자료 활용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동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 등으로 기재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

○ 예산 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Y-3년 결산액	Y-2년 결산액	Y-1년 예산액
합 계	계			
	여성(비율) (D/B)	(%)	(%)	(%)
	남성(비율) (F/B)	(%)	(%)	(%)
○○과	계			
	여성(비율) (D/B)	(%)	(%)	(%)
	남성(비율) (F/B)	(%)	(%)	(%)
…	계			
	여성(비율) (D/B)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인 여건,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성과달성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 분	Y-2년 실적	Y-1년 추정치	Y년 목표치
전 체			
○○과			
○○과			
…			

※ 부서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ㅇ 산출근거 :

□ 성평등 기대효과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사. 사업별 설명자료(사업담당자)

[세부사업명 :]

사 업 명	○ ○ ○ ○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기 관 명)
예산구조	(분 야)	(부 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성 인 지 항 목	(정책분야)	(정책과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자체 추진사업

※ 해당되는 칸에 "◯"표시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금 액(A-B)	증감률
계				%
일 반 재 원				%
국 고 보 조 금				%
특 별 교 부 금				%
자 치 단 체 보 조 금				%
지 원 금				%
기 타				%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 분		Y-3년	Y-2년	Y-1년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 통계출처 : 교육통계연보 자료 활용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동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 등으로 기재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시스템상)

○ 예산 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Y-3년 결산액	Y-2년 결산액	Y-1년 예산액
계			
여성(비율) (D/B)	(%)	(%)	(%)
남성(비율) (F/B)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인 여건,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Y-2년 실적	Y-1년 추정치	Y년 목표치

※ 부서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산출근거 :

□ 성평등 기대효과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강사료의 지급제한

- 관련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외부강의 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제25조 별표2]

·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 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시간당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 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시간당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적용기준**[시행령 제25조 별표2]

·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직자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직자 등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단,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쪽수	2018년	2017년	변경사유
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	5~8쪽	가.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내용 생략) 나. 교육재정 전망 (내용 생략)	가.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내용 생략) 나. 교육재정 전망 (내용 생략)	경제 전망 및 교육재정 여건 변동
지방교육재정운용 방향	9~10쪽	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가. 재원배분의 합리성 및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나.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및 신뢰성 강화 다. 교육개혁 과제 및 주요 정책사업에 중점 투자	교육부 '예산안 편성 지침' 반영
예산편성 수립 시 행정사항	10~24쪽	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기준 (내용 생략) 라. 행정사항 1) 예산안 편성 시 유의사항 ❑ 세출예산 사업 구분 -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가 아닌 업무추진비이므로 '본청운영' 등 해당세부사업에 편성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 철저 ⇒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과 연계관리를 위해 에듀파인을 통한 관리 철저 5) 통합재정통계 작성 관련 협조(내부거래) ⇒ 시도교육청간 거래 시 세입은 전입금(16201), 세출은 기타특별회계전출금(610-02)로 편성 * 지출결의 시 통일된 거래처명으로 처리	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기준 (내용 생략) 라. 행정사항 1) 예산안 편성 시 유의사항 4) 지방세 전입금 관리 철저	교육부 '예산안 편성 지침' 반영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방향	29~30쪽	가. 기본방향 (내용 생략) 나. 기본방침 (내용 생략)	가. 기본방향 (내용 생략) 나. 기본방침 (내용 생략)	2018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계획 (예산담당관-8243, 2017.8.31)

구 분	쪽수	2018년	2017년	변경사유
목(그룹)별 편성 요령	33쪽	❑ 2018년 예산편성 기준경비 o 특근매식비: 8,000원 o 급량비: 8,000원 이내 o 강사수당: p. 67쪽 참조	❑ 2017년 예산편성 기준경비 o 특근매식비: 7,000원 o 급량비: 7,000원 이내 o 강사수당: p. 67쪽 참조	효율적 사업추진 제고 및 현실화 반영으로 일부 기준경비 인상
	34쪽	가. 인건비 (내용 생략) o 생활임금액 : 일급 80,000원/시급 10,000원	가. 인건비 (내용 생략) o 생활임금액 : 일급 64,320원/시급 8,040원	「교특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정으로 기존 '기타직보수' 세목 폐지 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계약직교원보수' 세목 신설 생활임금 인상
	36쪽	1) 공통사항 o 경상운영비 감축노력강화 - 효율적 사업추진 및 현실화를 반영한 기준경비 인상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 노력		내용 추가
	40쪽	2) 민간이전 o 민간보조비 *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 가능		교육부 '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
	43쪽	o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 비품비 지원기준 - 학교급별 지원기준 - 예산지원시 참고사항 (내용 생략)	o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 비품비 지원기준 - 학교급별 지원기준 - 예산지원시 참고사항 (내용 생략)	수용지표 조정에 따른 변경
	47쪽	마. 전출금 등(600) 1) 자치단체(시도교육청포함) 특별회계전출금 (내용 생략)		교육부 '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
주요경비별 예산 편성기준	60쪽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주2) 교육공무직원 정원수 포함 (정원관리규정 및 인력관리협의회 통과 인원)		교육부 '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

<table>
<tr><th>구 분</th><th>쪽수</th><th>2018년</th><th>2017년</th><th>변경사유</th></tr>
<tr><td rowspan="4">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td><td>62쪽</td><td>5) 특정업무 경비
주 1) 교육감이 제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td><td></td><td>교육부 '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로 추가</td></tr>
<tr><td>64쪽</td><td>나. 위원회 참석수당
❑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소속직원포함)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본청 소속으로 봄)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td><td>나. 위원회 참석수당
❑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td><td>위원회 운영 어려움 해소 및 내실화</td></tr>
<tr><td>66쪽</td><td>바. 시험수당
⑤ 시험감독비(단가인상)
<table>
<tr><th>구분</th><th>단위</th><th>단가</th></tr>
<tr><td rowspan="2">평일</td><td>4시간미만</td><td>40,000원</td></tr>
<tr><td>4시간이상</td><td>50,000원</td></tr>
<tr><td rowspan="2">휴일</td><td>4시간미만</td><td>50,000원</td></tr>
<tr><td>4시간이상</td><td>70,000원</td></tr>
</table>
⑥ 면접, 실기채점비(단가인상)
<table>
<tr><th>구분</th><th>단위</th><th>단가</th></tr>
<tr><td rowspan="2">5급</td><td>4시간미만</td><td>50,000원</td></tr>
<tr><td>4시간이상</td><td>60,000원</td></tr>
<tr><td rowspan="2">6급 이하</td><td>4시간미만</td><td>40,000원</td></tr>
<tr><td>4시간이상</td><td>50,000원</td></tr>
</table></td><td>바. 시험수당
⑤ 시험감독비
<table>
<tr><th>구분</th><th>단위</th><th>단가</th></tr>
<tr><td rowspan="2">평일</td><td>4시간미만</td><td>20,000원</td></tr>
<tr><td>4시간이상</td><td>30,000원</td></tr>
<tr><td rowspan="2">휴일</td><td>4시간미만</td><td>40,000원</td></tr>
<tr><td>4시간이상</td><td>50,000원</td></tr>
</table>
⑥ 면접, 실기채점비
<table>
<tr><th>구분</th><th>단위</th><th>단가</th></tr>
<tr><td>5급</td><td>일당</td><td>40,000원</td></tr>
<tr><td>6급 이하</td><td>일당</td><td>30,000원</td></tr>
</table></td><td>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td></tr>
<tr><td>67쪽</td><td>사. 교육강사수당(단가인상)
<table>
<tr><th>구분</th><th>지급단가</th></tr>
<tr><td>특별강사1</td><td>기본료 300,000원
초 과 200,000원</td></tr>
<tr><td>특별강사2</td><td>기본료 200,000원
초 과 150,000원</td></tr>
<tr><td>일반강사1</td><td>기본료 160,000원
초 과 90,000원</td></tr>
<tr><td>일반강사2</td><td>기본료 100,000원
초 과 60,000원</td></tr>
<tr><td>일반강사3</td><td>기본료 80,000원
초 과 50,000원</td></tr>
</table>
o 지급대상 세분화(내용생략)
o 부정청탁금지법 사례금 안내</td><td>사. 교육강사수당
<table>
<tr><th>구분</th><th>지급단가</th></tr>
<tr><td>특별강사1</td><td>기본료 250,000원
초 과 150,000원</td></tr>
<tr><td>특별강사2</td><td>기본료 160,000원
초 과 120,000원</td></tr>
<tr><td>일반강사1</td><td>기본료 130,000원
초 과 70,000원</td></tr>
<tr><td>일반강사2</td><td>기본료 80,000원
초 과 50,000원</td></tr>
</table></td><td>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안내</td></tr>
</table>

구 분	쪽수	2018년	2017년	변경사유
부 록	73~121쪽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기준(교육부령 제225호, 2017.8.25. 제정) ≪ 주요 변경사항 ≫ -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에 비정규직 등 포함을 자율적용토록 규정 -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이므로 인건비항목에서 삭제 - 교직수당가산금9) 원가통계목 및 ‘무기계약보수’, ‘계약제교원보수’ 세목 신설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28호, 2015.1.26.) -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42호, 2015.8.20. 일부개정)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